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形成因子들에 관한 고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과의 비교를 통한
인적·내용적 분석에의 시도-

최호동**

목 차

- I. 서설
- II. 입법의원법의 입안과정에 관한 예비적 고찰
 - 1. 입법의원법의 기초 경과 및 주체
 - 2. 의정원법으로부터 입법의원법으로의 내용상 변화
- III.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인적 연속성
 - 1. 국회법 초안의 기초 경과
 - 2. 국회법 초안 기초의 주체
- IV.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내용상 차이와 그 요인
 - 1. 국회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주요 변인으로서의 일본법
 - 2. 당시의 헌법논의와 관련된 국회법 초안의 내용상 특이점
- V. 결론

[국문 요약]

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미친 주체는 (i) 입법의원법의 경우 주로 의정원에서 활동했던 기초위원이었던 반면, (ii) 국회법 초안의 경우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이는 국회법 초안이 주로 1947년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규칙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당시의 헌법논의

* 이 논문은 2018년 2월 22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지위와 활동』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모태로 하여 全面改稿한 것이다. 위 학술대회를 통해 원고를 준비·발표할 기회를 준 위 센터, 그리고 그 계기가 된 2017년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강독회를 후원해 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변호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chd1980@hanmail.net

구도로 말미암아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단원제를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8년 국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이 독자적인 태도표명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해방 이후의 첫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법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인식보다는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지금의 국회에 이르는 연속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찾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간 도외시되었던 입법위원의 원법이 국회의사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 1948년 국회법 초안, 임시의정원, 행정연구위원회

I. 서설

서구의 의회국가들은 대부분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조직·권한은 헌법에, 그리고 그 세부조직·의사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은 ‘議事規則’으로 제정하여 운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다소 달리 후자를 『국회법』이라는 법률로써 규율하고, 이 점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¹⁾가 전자를 『대한민국임시약헌』 내지 『대한민국임시헌법』에, 후자를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이하 ‘의정원법’)에 나누어 규정하였고, 1946-48년에 일종의 準입법기관으로서 구성됐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의 경우에도 — 비록 헌법은 없었으나 — 후자를 ‘院法’으로써 규율했던 것의 연속선상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해방 이후에 설치된 입법 의원은 1946.8.24.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군정청’)이 공포·시행한 군정법령(Ordinance)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창설』(이하 ‘군정법령 제118호’)에 따라 민선·관선 의원 각 45명씩으로 1946.12.12. 개원하여 ‘5.10 총선거’ 직후인 1948.5.20. 폐원하였고,²⁾ 정치적으로는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단일정부 수립을 도모하던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 구성된 임시 ‘행정부’의 명칭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정확히 말하자면 1946.12.11.부터 12.13.까지 ‘예비회’를 열었고 그 도중인 12.12. 개회식을 열었으며, 정식의 제1회 제1차 회의는 12.20.에 열었다.

‘중간과’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피하던 우익이 각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축하는 무대로 기능했다. 그리고 입법위원의 議員들이 개원 후 가장 먼저 입안한 것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이하 ‘입법의원법’)이었던 것이다.³⁾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입법의원은 본격적인 입법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입법위원의 존재에 불구하고 “군정청의 권한은 경감되지 아니함”이라 규정한 제11조를 위시하여, 군정법령 제118호는 입법위원의 ‘입법권’을 군정청의 군정장관⁵⁾이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었고,⁶⁾ 그러

-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1』(여강출판사, 1984)의 속기내용을 보면 입법의원법의 명칭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인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인지에 관해 혼동의 소지가 있다. 입법의원법의 초안은 그 표제를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안(案)으로 하였으나(위 책 167면), 1946.12.27. 그에 대한 수정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표제로 하였으며(위 책 145면, 150면에 기재된 수정위원 윤기섭의 발언내용), 이후 표제는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자를 따르기로 한다.
- 4) 입법의원법이 비록 그 명칭을 ‘法’으로 하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군정법령 제118호에 따라 당시 군정청이 수시 발행하던 『관보(Official Gazette)』에 공포된 정식의 법률로서 발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법이 예컨대 이길상 편, 『미군정청 관보 Vol. No.3(Oct. 1946–Sept. 1947)』(원주문화사, 1992), 523–536면에 원법의 내용이 —국문본은 없이 영문으로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점들로 볼 때 그것이 통과당시의 정식 관보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위 책자는 그 자체로서 기록물 군 『Records of the Treasury Department in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Geographic Files: The Far East, 1944–1959』 중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12의 일부(프레임번호 0749)를 이루는 Korea: Official Gazette Ordinances, Vol. III [includes Korean translation, 1948]라는 문서를 영인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lexisnexis.com/documents/academic/upa_cis/16538_asstsecintlafisgeofilesfareast.pdf, 2018.2.22. 최종방문). 이로써만 보더라도 원법 제정당시의 관보가 아니라 1948년에 사후적으로 제작된 ‘법령집’에 불과하다. ② 한편 위 책 5면의 목차를 보더라도 원법을 지칭하는 “Rules”의 제정일시는 “Undate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위 책에 수록된 입법의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수차례의 개정내역에 대조하여 보더라도 위 『미군정청 관보』의 내용은 1947.2.17. 이후 1947.11.24.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입법의원법을 정식의 ‘법률’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하에서는 의정원법이나 국회법의 경우와 같이 “제정,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는 편의상의 표현임을 밝혀둔다.
- 5) 초대 군정장관은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재임기간 1945.9.12.~1946.1.4) 소장, 제2대는 러취(Archer L. Lerch, 재임기간 1946.1.4.~1947.9.11) 소장, 제3대는 딘(William F. Dean, 재임기간 1947.11.25.~1948.8.15.) 소장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군정장관’ 항목 참조). 그 중 이 글에서 주로 문제삼는 입법위원의 개원 초기부터 1947년 중반까지의 시기에 걸쳐 군정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는 러취 소장이었다.
- 6) 군정법령 제118호는 입법위원을 민선·관선 의원 각 45명으로 구성되는 과도입법기관으로서 설립 하면서도(제1조, 제3조), 그 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입법위원의 직무가 “법령을 제정함”에 있다고 하면서도(제5조 제1항) 그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하여 서명·날인하여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 비로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동조 제4항).

한 제약은 1947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실제로도 입증했다.⁷⁾ 그 이후로 입법 의원 내외를 막론하고 기구의 존립의의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고, 결국 입법 의원은 UN의 남한 단독정부수립 결정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의 제정을 끝으로 폐원하고, 이후 입법기구로서는 거의 전적으로 실패한, ‘반면교사’로서만 인식되어 왔다.⁸⁾ 그에 따라 입법의원법의 의의도, 대한민국 국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 면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정상우는, 입법의원법이 1948년에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과 어느 정도 체계·내용상의 유사성을 띠고 국회법의 제정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⁹⁾ 다만 그가 입법의원법에 관심을 가진 것은 1차적으로 동법이 내포하고 있던 ‘중간과’의 헌법구상이었지¹⁰⁾ 국회법에 대한 영향관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후속연구는 이에 대해 “본회의 중심주의나 의장의 권한, 의사진행 방식 등은 과도입법의원과 1948년 국회에서 유사한 면도 볼 수 있었다”면서 “과도입법의원법이 국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데 그친다.¹¹⁾ 한편 이와 관점은 다르지만 2018년에 손병권은 보다 시야를 넓혀 의정원법-입법의원법-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내용상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성과를 발표했다.¹²⁾ 다만 위 연구는 비교의 범위를

7) 이러한 제약은 군정정이 (i) 입법의원에서 입안한 『남조선과도약헌』, 『부일협력자등에관한특별법률』에 대한 공포(公布)를 무기한 보류하고, (ii) 『보통선거법』에 선거권연령을 15세로 인하하려는 민선의원들의 움직임이 일차 러취 군정장관이 “그러한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하여 좌절시키면서도, (iii) 다른 한편으로 입법의원에는 상정되지 않은 ‘법률’을 다수 공포·시행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8) 이러한 인식의 예로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48면.

9)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과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33-141면.

10) 입법의원법은 (i) 그 성격을 의사절차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입법의원 자체의 설치근거 내지 성격(특히 군정정부로부터 행정권 이양을 통한 독립정부 수립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었고, (ii) 행정수반의 선출 등 행정부(군정정)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헌법적인 성격을 담고자 했으며, (iii)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간과의 ‘좌우합작 7원칙’에 기반하여 건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구상을 담고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11) 류지성 외,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의 제3장(정상우 집필부분), 133면.

12) 손병권 외,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푸른길, 2018) 중 제1장 ‘대한민국입시의정원, 남

법률의 章 편제, 위원회의 구성, 의사절차 중 讀會제도라는 세 부문에 한정했을 뿐 아니라, 법률들의 외형적 비교에 그쳐 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위와 같은 시사점과 한계를 取捨하여 ① 의정원법, ② 입법의원법, ③ 국회법 초안의 3자, 특히 그 중에서도 ②와 ③의 법들 사이에서 서로 같고 다른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각 기초주체들, 그리고 국회법 起草의 전제가 되는 당시의 헌법논의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점의 발생요인을 추적함으로써, 1948.6. 기초된 국회법 초안의 기초과정을 그 要因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¹³⁾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의정원법 → 입법의원법 → 국회법으로의 연쇄과정에서 국회법의 전 단계에 위치한 입법의원법의 기초과정에 먼저 주목하여 그 기초주체의 분포양상, 그로써 입법의원법이 의정원법에 대한 관계에서 내용상 달라진 양상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의원법과 국회법의 기초에 공통적으로 관여한 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이 확인될 것이다(II). 그리고 국회법 초안의 형성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로 나아가, 먼저 전문위원의 대부분을 행정연구위원회 구성원들이 맡았다는 점에서 입법의원법과의 연속요인에 대한 단초를 획득한다(III). 그리고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 대비하여 가지는 내용상의 주요 차이와 관련해 1947년의 일본법이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다른 한편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한 요인을 탐색해 본 뒤(IV), 이를 정리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V).

조선과도입법의원, 그리고 제헌국회: 제도적 전승과 변화'(손병권 집필부분), 20-57면.

13) 국회법은 위에서 보듯이 1948.6. '초안'의 형태로 일단 국회에서 가결·'공포'된 뒤 1948.9.에 다시 국회에서 일련의 논의를 거쳐 법률 제5호 국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초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의 수정·개정 논의과정은 국회속기록을 통해 뚜렷이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정작 '초안'이 기초된 과정과 그 요인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사료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이 '초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II. 입법의원법의 입안과정에 관한 예비적 고찰

국회법 초안의 입안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직전 시기의 ‘院法’인 입법의원법을 기초하였던 주체와 그 기초내용, 특히 그것이 의정원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회법 초안의 起草에 영향을 준 인적·내용적 인자에 대한 일련의 시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입법의원법의 기초 경과 및 주체

전술한 군정법령 제118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입법의원은 처음부터 — ‘準’이라는 말머리를 단다고 하더라도 — 입법기관이라기보다는 군정청의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그런 점에서 입법의원원의 관선·민선 의원들이 초기 입법의원원의 운영에 대해 일말의 적극성을 떨 이유는 전무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속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의원들이 입법의원원의 운영에 대해 보인 — 때로는 일견 무모하다고까지 느껴지는 — 열의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입법의원 議員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46.10. 중순에 당시의 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는, 입법의원에서 향후 제정할 법률이 (i) 주한미군을 조선으로부터 축출하는 내용, (ii) 미곡수집의 책임을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 (iii) 또는 조선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아닌 한, 위 법령에 규정된 ‘부인권’(즉 입법의원원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 “동의하여 서명·날인하여 관보에 공포”하지 않을 군정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¹⁴⁾ 이러한 군정청 측의 약속은 입법의원원의 개원을 맞은 의원들에게, 입법의원원이 군정청의 행정권 이양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의 ‘입법기관’으로 기능하리라고 믿게 되는 근거가 되었고,¹⁵⁾ 이에 입법의

14) 러취는 이 점을 1946.10.11.과 10.19. 반복하여 언론에 발표했다. ‘입법기관에 대한 부인권행사 / 러 장관 3항 거사’, 1946.10.12.자 대동신문 1면; ‘입법에 부인권 행사범위’, 동일자 경향신문 1면; ‘입법원의 부인권 행사’, 1946.10.19.자 대동신문 1면; ‘입법원의 부인권 한정’, 동일자 동아일보 1면; ‘입법의원에 행사할 3종의 부인권’, 동일자 대한독립신문 1면 등.

원 관선의원의 주류를 차지한 중간파, 민선의원의 중심이 된 우파, 그리고 소수의 좌파 의원들은 이로써 입법위원을 통해 각자의 헌법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입법의원 초반에 진지하게 투영하였던 것이다.

입법의원은 1946.12.11. 첫 집회를 하면서부터 원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같은 날 전형위원 7명(윤기섭, 최명환, 탁창혁, 허규, 박현숙, 안재홍, 강순)¹⁶⁾은 5명의 후보를 추천하였고, 입법의원은 12.13. 그 중에서 득표순으로 이봉구(관선, 48표), 김봉준(관선, 43표), 윤기섭(관선, 33표)을 원법기초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김봉준은 제14대(1929년)·제18대(1939-1941년), 그리고 윤기섭은 제7대(1923-1924년) 임시의정원 의장을 각각 역임하였고,¹⁷⁾ 이 시기에는 모두 임시의정원법이 전술한 1942년 의정원법과 흡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봉구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31년부터는 도쿄에서, 1938년부터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지내고 있던 인물로서,¹⁸⁾ 임시정부 출신인사들을 중심으로 1946년에 구성된 '비상국민회의'의 헌법분과위원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였다.¹⁹⁾ 이러한 인선에서부터 입법의원법의 기초가 의정원법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15) 입법위원의 위상에 관한 초대 의장 김규식의 다음과 같은 설명(위 속기록, 125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美 측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이 입법위원이 생겼으니까 군정령 명령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정령에서 나오는 법령은 무슨 법령을 막론하고 이 입법위원에서 제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령을 여기에서 통과해 달라’고 군정장관이라든지 행정수뇌로서 요구해서 여기에서 통과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행정수뇌라든지 군정장관이라든지가 그 서명을 해 가지고 그 법령을 시행시키는 것이올시다.”

16) 이 중 최명환을 제외한 6명은 모두 관선의원이었고, 그 성향분포는 김영미의 분류에 따르면 우익(박현숙), 중도우익(안재홍), 중도좌익(윤기섭·허규), 좌익(탁창혁·강순)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김영미, 『1946년 입법의원 선거』, 『국사관논총』 제75집(국사편찬위원회, 1997), 148-149면의 [표 9] 참조.

17) 이에 관하여는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상건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대한민국 국회, 2009) 참조(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42-43면에서 재인용); 이재호,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141면.

18) 김영미, 앞의 글, 153면.

19) 비상국민회의의 활동경과를 포함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김수용, 『건국과 헌법』(경인문화사, 2008), 53-64면(특히 64면)을 참조. 한편 1946.12.13. 입법의원 제3차 회의(즉 마지막 예비회의)에서 전형위원이었던 안재홍은 이봉구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이 점을 적시하고 나아가 “원법에 대해서 담당해서 연구하시던 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의 속기록, 53면.

그런데 입법의원법의 기초에는 이들 위원 3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입법의원법 초안을 1946.12.20. 완성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기초위원들을 대표하여, 윤기섭은 1946.12.23. 입법의원 전체회의에서 그 기초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⁰⁾

본래 기초위원회에게 기초해 드리려는 것은 3일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위원이 3개일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래부터 입법위원의 이 사무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시던 이의 세 분을 아울러 가지고 이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사흘 밤까지를 새고 위원 세 분은 하루 밤을 새서 겨우 기일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위원 세 분’은 누구였을까? 이를 직접 밝혀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전부 또는 상당수가 해방 직후 신익희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던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성원이었음이 분명하다.

행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상에 관하여는 김수용이 상세히 정리하였는 바,²¹⁾ 요컨대 이는 1945.12.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 명의로 신익희가 건국 준비의 일환으로 헌법·정부조직·의회 등의 기본법제도의 입안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일제강점기 고등문관 출신의 前職 기술관료를 주 구성성분으로 하였다. 이들은 입법위원이 출범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事務局의 실무책임 요직에 널리 기용되었는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노용호(부사무국장)·윤길중(총무과장 겸 법률기초과장)·김용근(위원과장)·차윤홍·황동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i) 노용호는 그 직후인 1947.1. 초에 부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²²⁾ (ii) 윤길중은 입법의원 개원 당시부터

20) 앞의 속기록, 95면.

21) 김수용, 앞의 책, 21-29면.

22) 앞의 속기록, 263면(1947.1.6.자 회의). 노용호는 1937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입법의원 부사무국장과 국회 전문위원을 마친 뒤 1949년에 사법행정처장, 1952년에는 초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위 사무국 산하의 총무과장과 법률기초과장을 겸임하여 입법의원 초창기의 조직·직제 등을 총괄하였다고 스스로 술회하였다.²³⁾ 또한 임용시기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iii) 김용근은 적어도 1947.5.6. 이전에는 입법의원 위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²⁴⁾ (iv) 차유훈 또한 입법의원 전문위원 출신으로 국회 기초위원회 활동당시 소개되고 있었다.²⁵⁾ (v) 그 외에, 황동준도 개원시부터 입법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술회하고 있다.²⁶⁾ 반면 사무국장은 행정연구위원회 회원이 아닌 전규홍이었으나, 그는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에서 법학학사를 마친 뒤 1929년에 渡美, 미국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해방 이후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事務局長으로서의 역량과 별개로 조선의 법제실무에 밝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제실무 요직은 위 행정연구위원회 회원들이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입법의원법 초안 중 헌법적 성격을 가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다도 행정연구위원회의 영향이 역력하다. 그러한 예로 議員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입법의원법 초안 제3조의 내용을 행정연구위원회에서 1946.3.에 마련했던 헌법안인 『한국헌법』(김수용의 용례에 따라 ‘행정연구위원회안’)의 제9조와 비교해 보면, 종래의 의정원법 규정에 비해 행정연구위원회안과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23) 윤길중, 『청곡 윤길중 회고록: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호암출판사, 1991), 77면. 윤길중은 이후 제2대·제5대·제8대 국회의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8인 정치회담의 민주정의당 회담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24) 이는 — 속기록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 1947.5.6.의 제67차 입법의원 회의에 관한 보도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부일협력자등처벌특별법』의 수정안 심의에 친일파가 고문 격으로 참여하더라는 점이 문제시되어 청원정계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조사보고를 위 회의에서 했는데, 윤길중(입법의원 총무과장, 일제강점기 군수), 김용근(입법의원 위원과장, 일제강점기 군수), 노용호(입법의원 부사무국장, 일제강점기 판사)의 3인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공개회의 / 67차 입의’, 1947.5.7.자 동아일보 1면; ‘입의 67차 본회의’, 동일자 민중일보 1면 각 참조.

25) ‘헌법 및 국회법 전문위원 임명’, 1948.6.5.자 수산경제신문 1면. 차유훈은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영암보통학교 훈도(訓導, 교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34년에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뒤 1938년부터는 강진군수를 지냈다. 입법의원과 국회 전문위원을 지낸 이후 그는 1949년에는 상공부 상공국장, 1950년에는 경제위원회 물가분과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6.25 전쟁기에 납북되었다.

26) 황동준, 『민주정치와 그 운용』(한일문화사, 1962), 317면.

27) 행정연구위원회안의 작성경과에 관하여는 김수용, 앞의 책, 29면 이하를 참조. 행정연구위원회에서

〈표 1〉 議員의 면책특권에 관한 임시약헌·헌장,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안 및 입법의원법 초안의 관련규정

|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9조, 1944.4.22. 대한민국임시헌장 15조 | 행정연구위원회 『한국헌법』 제9조 (1946.3.) | 입법의원법 초안 제3조 (1946.12.) |
|--|---|--|
| 의원은 회기중 원의 허 가 없이는 그 자유의 방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 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 하여는 원외에서 책임 을 지지 아니함. |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언 론 및 표결에 관하여 원 외에서 문책을 받지 아니 함. 단 의원이 스스로 기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써 공포한 경우에는 일반법 률에 의하여 처분받음. | 의원은 원내(본원의 회의석상이 나 각종 위원회의 회의석상)의 언 론 및 표결은 자유이며 아무 곳에 서도 그 언론과 표결에 대하여 질 문을 받지 아니함. 단, 의원이 그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 법으로 공포할 때에는 일반법률 에 의하여 처분됨. |

다만 임시의정원법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세 사람’ 내지는 행정연구위원회가 원법의 기초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이는 (i) 해방 전까지 원법의 제·개정 경험이나 의정활동 경험이 전무했던 전규홍도, (ii)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와는 대척점에 있는 조선총독부의 관료로만 재직했던 행정연구위원회 구성원들도, 의정원법과 크게 다른 외국, 특히 일본의 국회관련 제도를 도입하지는 견해를 피력·관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위원들이 대부분 임시의정원 의장 등으로 다년간의 의정경험을 쌓았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와 같은 추측에 따른 인적 관계가 규정내용에 반영되는 양상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1946.3.1.에 작성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일조각, 1980), 195면 이하(附 III. 행정연구회의 헌법초안)에 수록되어 있는 案으로서, 표제는 『한국헌법』이다.

2. 의정원법으로부터 입법의원법으로의 내용상 변화

1) 비교의 대상

위 3개 법률에 대한 비교에 앞서, 이들 법률은 모두 일련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므로 그 중에서 각 어느 단계의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할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정원법의 경우 —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洪震이 해방 후 한국 하면서 가져온 임시정부 문서군의 상당량이 6.25 전쟁으로 소실됨으로 인하여 — 그 개정내역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할 사료는 부족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서 중에서, 해방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정된 의정원법으로 전해지는 것은 1942.10. 개정법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삼는다.²⁸⁾

한편 입법의원법의 경우 세부적인 개정내역이 상당히 복잡하다. (i) 입법의원에서 1946.12.13. 구성한 원법기초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윤기섭, 김봉준)가 동년 12.20. ‘초안’을 제출한 후,²⁹⁾ (ii) 이에 대해 입법의원은 동년 12.23. (제2차 회의)부터 12.26.까지 토론을 하다가 위 기초위원 전원에 신규위원 2명(김법린, 최동오)을 더해 원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수정안’은 이튿날인 12.27. 입법의원에게 보고되었다. 이후로도 입법위원의 행정부(군정청)에 대한 권한 규정과 관련하여 군정청이 원법을 수정토록 요구한 데 따라 (iii) 1947.2.17. 원법 제62조(입법위원의 행정수반 선거권 및 行政長 임명동의권)과 제63조(행정관리 출석진술 요구권)이 개정되고, (iv) 그리고 동년 11.24.에 원법 제62조가 재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 ‘초안’을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한다. 초안 이후의 수정논의는

28) 손병권, 앞의 글에서는 1919.9.15. 개정 의정원법이 1942.10. 개정 의정원법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전자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해방기를 전후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진 의정원법 → 입법의원법 → 국회법으로의 변천사를 검토한다는 목적상, 후자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1942.10. 개정 의정원법의 출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2권(임시의정원 I)(국사편찬위원회, 2005), 7-19면과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2권(임정편 II)(국사편찬위원회, 1971)에 수록된 “개정 임시의정원법(1942.10.)”이다.

29) 이 초안의 내용은 앞의 속기록, 167-175면에 수록되어 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에 뒤이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록내용이 위 ‘수정안’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수정안에 대한 속기록의 여타 토론내용과 대조해 보면 이것이 초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입법위원의 성격 내지 지향점에 관한 논의(제2조)와 군정청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제62조, 제63조)에 집중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해방공간에서의 좌·우파 그리고 중간파의 헌법구상을 1차적인 관심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³⁰⁾

2) 편제상의 유사성

우선 章의 편성 면에서 의정원법과 입법의원법이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입법의원법 초안은 의정원법 제2장 ‘議員’에 있던 규정들 중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들과 請暇·辭職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 독립한 章으로 편성하였다(제4장, 제10장. 다만 제4장은 1946.12.27. 수정안에서 다시 제2장 ‘의원’으로 편입되었다). 둘째는, 의정원법에서 의정원의 행정부에 대한 관계 내지 권한을 ‘질문·탄핵·건의及 查辦’(제7장), ‘국무원及 정부위원’(제9장), ‘本院과 인민及 관청의 관계’(제13장)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것을 모아 ‘제8장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에 관계’로 묶어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군정법령 제118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입법의원은 행정부(미군정청)에 대해 임시의정원과 같은 對政府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점을 제외하면 두 법의 篇題는 사실상 동일하다(아래 <표 2> 참조).

<표 2> 의정원법·입법의원법 초안의 각 章 편성

| 장 표제 | |
|----------------|--|
| 의정원법(1942.10.) | 입법의원법(1946.12.23. 초안) |
| 제1장 집 회 | 제1장 소집, 개회, 휴회 |
| 제2장 의 원 | |
| 제3장 의장, 부의장 | |
| | 제4장 의원자격심사 (12.27. 수정과정에서 제2장으로 흡수) |

30) 그 전체상에 관하여는 정상우, 앞의 책, 133-141면을 참조.

| 장 표제 | |
|----------------------|-----------------------|
| 의정원법(1942.10.) | 입법의원법(1946.12.23. 초안) |
| 제4장 위원회 | 제5장 위원회 |
| 제5장 회 의 | 제6장 회 의 |
| 제6장 예산과 결산 | 제7장 예산과 결산 |
| 제7장 질문·탄핵·건의 及 查辦 | 제8장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에 관계 |
| 제8장 청 원 | 제9장 청 원 |
| 제9장 국무원 及 정부위원 | 제10장 청가, 사직 |
| 제10장 비서국과 원의 經費 | 제11장 원의 행정 及 經費 |
| 제11장 경위와 기율 | 제12장 警衛, 질서 及 방청 |
| 제12장 징 계 | 제13장 징 계 |
| 제13장 본원과 인민 及 관청의 관계 | 제14장 보 칙 |
| 제14장 보 칙 | |

3) 구체적인 규정 내용상의 유사성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비교해 보는데, 상세한 규정의 비교는 [부록 1]에 수록하고, 아래에서는 그 대체적인 유사성을 개관한다.

院의 개회와 폐회를 “스스로” 행한다는 제1조 제1항을 비롯하여,³¹⁾ 입법의 원법은 의정원법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고 있다([부록 1] 참조). 그 예로는, (i) 부의장을 2인으로 늘리고(제6조), (ii) 임시헌법·임시선거법 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 기초위원

31) 이 “스스로”라는 문구는, 임시의정원과 입법의원 모두 행정부에 의한 소집을 배제하고 議院으로서의 자율권에 기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먼저 임시의정원의 경우, 당초 1919.9.11. 폐지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22조), 임시의정원이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1925.3.23. 의결)한 직후인 1925.4.7. 새로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부터는 “임시의정원은 매년 11월에 임시의정원이 自行召集”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입법의원의 경우 원법기초위원인 윤기섭 부의장이 起草取旨를 설명한 중의 다음 대목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술는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자체소집이 원칙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과도입법기구일망정 이 입법기구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소집은 院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앞의 책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1』, 121면).

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³²⁾ (iii) 議政 보조자로서 分課會의 ‘간사’,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하였고(제32조, 제33조), (iv) 의정원법과 달리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제42조) (v) 의사절차에 관하여 동일의제에 관한 議員의 발언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제57조) 등을 신설하고, (vi) 院의 사무기구로 의정원법이 비서관만을 두었던 데 반해 입법의원법은 이를 비서처·사무처로 확장하였고(제81조), (vii) 기타 청원·방청·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항이 사소하다고 볼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의정원법과의 관계에서 내용면에서 혁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4)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차이점과 그 要因

이와 같이 골간이 대동소이하고 규정상의 增補가 대부분 議院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원법이 의정원법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은,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명칭에 관해서이다. 의정원법이나 입법의원법 모두 상임위원회를 8개 설치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편성방식에 있어서 의정원법은 ‘법제’, ‘재무’, ‘군무’와 같이 1개 부문씩을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였던 데 비해, 입법의원법은 ‘법제사법’, ‘내무경찰’과 같이 2개씩의 부문을 묶어 위원회를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입법의원법이 상임위원회를 편성한 구체적인 양태가,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주도하여 구상한 행정조직에 거의 그대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입법의원에서는 신익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을 1947.2.27. 본회의에 상정하였다.³³⁾ 이 법은 이후 입법의원에서의 논의과정

32) 정상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건국의 과제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상우, 앞의 논문(주 9), 140면.

33) 그 全文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2』(여강출판사, 1984), 61-64면에 수록되어 있다. 그 입안·심의 경과를 포함하여 1948년 정부조직법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글로는 송순섭,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에 관한 소고」,

을 통해 『남조선임시행정조직법』으로 제명이 바뀐 것을 비롯해 상당한 내용 변화를 겪었으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 초안은 신익희 혹은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 ‘원안’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 규정한 정부조직과 입법의원법 초안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조직은 매우 밀접한 대응관계를 보이는데, 이를 圖示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의 행정조직과 입법의원법·국회법 초안의 상임위원회 구성

|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 (1947.2.27. 입법의원 제출)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 초안 (1946.12.23. 입법의원 제출) | | 국회법 초안 (1948) | |
|---|---|--|---|------------------|---------|
| 법제처 | ≡ | 법제사법 위원회 | 제1분과회 : 법제 | ⇒ | 법제사법위원회 |
| 사법부(司法部) | | | 제2분과회 : 사법 | | |
| 내무부 (지방국)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공보처 (여론조사국) | ≡ | 내무경찰 위원회 | 제1분과회 : - 내무일반 - 행정조직 - 자치조직 - 考試 - 감찰 - 國勢調査 | ⇒ | 내무치안위원회 |
| 내무부 (경무국) | | | 제2분과회 : 警務 일반 | | |
| 재무부 (司計局) | ≡ | 재정경제 위원회 | 제1분과회 : - 예산 - 결산 | ⇒ | 재정경제위원회 |
| 재무부 (화폐국) (은행국) | | | 제2분과회 : - 경제일반 - 통화 - 금융 | | |
| (전매국) (세무국) | | | 제3분과회 : - 전매 - 세무 | | |

『법사학연구』 제58호(한국법사학회, 2018), 117-148면(그 중 행정연구위원회의 영향가능성을 지적하는 부분으로는 132-135면). 이 글에서 필자는 송순섭에 비해,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의 정부 조직 구상에 대한 신익희 및 행정연구위원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음을 밝힌다.

|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 (1947.2.27. 입법의원 제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 초안 (1946.12.23. 입법의원 제출) | | 국회법 초안 (1948) |
|---|--|--|------------------|
| 공상부 (工政局) (鑛務局) (商務局) (通商局) | ≡ | 산업노동위원회 제1분과회 : - 공업 - 광업 - 상업 - 무역 | ⇒ 산업노동위원회 |
| 농림부 (농지국) (農政局, 林政局) (수산국) 노동부 | ≡ | 제2분과회 : - 농지 - 농림 - 수산 - 노동조직 | ⇒ |
| 외무부 | ≡ | 외무국방위원회 제1분과회 : 외무 | ⇒ |
| 군무부 | ≡ | 제2분과회 : 국방 | ⇒ |
| 문교부 (고등·보통교육국) (敎化局) | ≡ | 문교후생위원회 제1분과회 : - 학교 - 종교 - 敎化 | ⇒ |
| 보건후생부 (후생국) (보건국) | ≡ | 제2분과회 : - 후생 - 보건 | ⇒ |
| 교통부 | ≡ | 운수체신위원회 제1분과회 : 운수 | ⇒ |
| 체신부 | ≡ | 제2분과회 : 체신 | ⇒ |
| (청원·징계는 의회 고유권한) | ≡ | 청원징계위원회 제1분과회 : 청원 제2분과회 : 징계 | ⇒ |

즉 필자는 행정연구위원회가 위와 같은(혹은 그와 적어도 흡사한) 정부조직을 상정하고서,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입법의원법의 상임위원회 조직을 입안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위에서 보듯이 국회법 초안의 상임위원회 조직으로 거의 똑같이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회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에서 행정연구위원회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한 가지라고 본다.³⁴⁾

34) 나아가 이는, 현재에 이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司法’이 司法府가 아닌 司法部를 전제로 하는 군정시대적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Ⅲ.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인적 연속성

1. 국회법 초안의 기초 경과

먼저 국회법 초안의 기초과정을 개관한다. 입법의원은 『국회의원선거법』(1948.3.17. 군정법령 제175호)이 제정된 이후³⁵⁾ 5.10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면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1948.5.19. 공포 군정법률 제12호, 동년 5.30. 시행)으로써 해산되었다. 이에 뒤이어 대한민국 국회(이하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5.31. 개회하였기는 하나, 국회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규정할 법률은 미리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의 기초는 처음부터 ‘날 짜를 다투는’ 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

제헌국회는 1948.6.1. 제2차 회의에서, 銓衡委員 10명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국회법 及 국회규칙 기초위원’(이하 ‘국회법 기초위원’) 15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전문위원 5인 내지 10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구성과 국회준칙에 관한 결의』를 가결하고, 같은 날 남한 8개 道와 서울·제주도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추천하였다.³⁶⁾ 그리고 역시 다음날인 6.2. 위 전형위원들은 아래 [표 4]와 같이 15명을 국회법 기초위원으로 선임했다.³⁷⁾

35) 『국회의원선거법』은 입법의원이 의결하여 1947.9.3. 군정법률 제5호로 공포되었던 『立法議院議員選舉法』을 UN 한국위원회가 수정하여 군정법령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 제정경과에 관하여는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한국정치학회, 1996), 69-90면을 참조.

36) ‘국회법 及 국회규칙 기초위원’(15명)뿐만 아니라 ‘헌법 及 정부조직법 기초위원’(30명)도 이들 10명에 의해 선정되었다.

37) 아래 표들에서의 지역구, 소속정당, 직업 및 경력 기재는 모두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1948.5.10.~1972.10.16.』(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1073면 이하의 ‘당선거명부’ 항목 기재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제헌국회의 개회 당시의 정당별 의석(총 200석)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이에 관하여는 같은 책, 616-617면.

| | | |
|-----------|-----|-------|
| 무소속 | 85석 | 42.5%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5석 | 27.5% |
| 한국민주당 | 29석 | 14.5% |
| 대동청년단 | 12석 | 6% |

〈표 4〉 1948년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 위원 명단

| 성명 | 지역구 | 소속정당 | 직업 | 경력 |
|---------------|--------|---------------|-------------------|------------------------------|
| 장기영 (연락위원) | 강원 영월군 | 무소속 | 무직 | 대졸. 미국에서 귀국. |
| 전진한 | 경북 상주군 | 대한독립노동 총연맹 | 대한독립노동 총연맹 위원장 | 대졸. 사회부장관. |
| 최윤동 | 경북 대구시 | 한국민주당 | 무직 | 중국육사 졸. 광복회장. |
| 이원홍 | 경남 합천군 |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 변호사 | 보성전문 법과 졸. 변호사 10년. |
| 김약수 | 경남 동래군 | 조선공화당 | 무직 | 중졸. 항일투쟁. |
| 김장열 | 전남 완도군 | 무소속 | 무직 | 대졸. 경찰서장. |
| 정광호 | 전남 광주시 | 한국민주당 | 농업 | 대졸. 광주시장. |
| 김봉두 | 전북 장수군 | 무소속 | 실업 | 일본메이지대학 법학부 졸. 대지건설회사 사장. |
| 배헌 (연락위원) | 전북 이리시 | 무소속 | 회사원 | 만주무관학교 졸. 정부고문. |
| 김명동 | 충남 공주군 | 무소속 | 농업 | 소졸. 서당선생 9년. |
| 성낙서 | 충남 대전시 |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 무직 | 대졸. 도지사. |
| 정구삼 | 충북 옥천군 |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 농업 | 소졸. 영농. |
| 이유신 | 경기 부천군 |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 상업 | 중학 졸. |
| 서정희 (위원장) | 경기 포천군 | 한국민주당 | 농업 | 소졸. 독립운동. |
| 윤치영 | 서울 중구 | 한국민주당 | 민주의원 비서국장 | 미국 아메리칸대학 졸. |

조선민족청년단 6석 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1.0%
 대한노동총연맹, 조선민주당, 대한청년단, 한국독립당, 교육협회, 단민당, 대성회, 전도회, 민족통일
 본부, 조선공화당, 부산15구락부 : 각 1석 0.5%

그리고 국회법 기초위원들은, 6.3. 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여 서정회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하는 한편 전문위원으로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의 5인을 선임하고는,³⁸⁾ “극히 간단히 회의를 끝마쳤다.”³⁹⁾

이후의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 6.4.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5.에는 오전 10:00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⁴⁰⁾ 그리고 6.7.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⁴¹⁾ 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4.부터 6.7.까지 단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6.8.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⁴²⁾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국회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6.10.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써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

38) 『제1회 국회속기록』(대한민국국회, 1948) 제5호(6.8.) 4면에 기재된 국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서정회의 동년 6.3.자 및 6.7.자 각 보고.

39) 『국회 分委 / 헌법 등 기초 착수』, 1948.6.5.자 경향신문 1면 기사.

40)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6.6.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41)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국회의사록 권1』(대한민국국회, 1948),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dl.nanet.go.kr>)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42)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이를 이하에서는 ‘국회법 초안’으로 지칭한다).

이후 헌법이 제정된 뒤인 1948.9.10. 국회법 초안에 대한 위 ‘조건’에 근거하여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의견들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한 ‘국회법’이 동년 10.2. —이제는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 제1호 『공포식령』이 정한대로— 법률 제5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이를 공포한 같은날의 관보에는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개정 국회법을 이에 공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회법 초안 기초의 주체

이상과 같이 쾌속으로 이루어진 기초경과를 참고하면서 위와 같은 기초위원·전문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기초위원 중에서는 입법의원법이나 더 나아가 의정원법의 기초에라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국회법이 기초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종의 저본(底本)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기초위원회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의 성격상 (i) 종전에 국회법 또는 그에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본 경험이 있거나, (ii)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경험이 상당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의원에 의원(議員)으로서 참여한 인물로는 김약수가, 그리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한 인물로는 정광호가 유일하고, 국회속기록의 토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김약수 또는 정광호가 국회법 초안의 기초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한편, 그러한 가운데 기초위원의 정파별 분포를 보면 무소속 위원이 5명(33%)으로 그 비중(42.5%)이 의석비율에 비해 적은 반면, 한국민주당(‘한민당’) 소속위원이 4명(26.6%)으로 의석비율(14.5%)에 비해 크게 많다는 점도 발견된다.

둘째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규홍을 제외한 노용호·

차윤홍·김용근·윤길중은 모두 행정연구위원회 회원이라는 점이다.⁴³⁾ 이는 5.10 총선거 직전에 군정청에 구성된 국회선거위원회의 사무국 요원으로 이들을 전면 기용한 것으로써 매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48.3.3. 구성된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에는 전규홍, 사무차장에는 노용호, 그 산하 3개 부(部) 중 2개인 계획부, 선전부의 부장에는 각각 김용근과 윤길중이 기용되었던 것이다.⁴⁴⁾ 특히 이들은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들이 —헌법안의 입안에 병행하여— 국회법 초안을 1948.5.14.경부터 입안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최하영의 진술⁴⁵⁾

- 답(필자 주: 최하영) = (중략) (필자 주 : 헌법초안의) 제2단계의 헌법초안 심의 때에는 (필자 주: 1948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장경근씨, 이상기씨, 노용호씨, 차윤홍씨, 김용근씨, 윤길중씨, 황동준씨, 유진오씨, 그리고 최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 답 = (중략) 우리들이 기초하고 심의작성하여 제헌국회에 제공한 것은 헌법 초안뿐이 아닙니다.
- 문(필자 주: 『국회보』 기자) = 그럼 다른 것도..
- 답 = 국가로서 출발할 때에 최소한도로 필요불가결한 법률은 즉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인데, 이상 3개 법률 초안을 한꺼번에 모두 5월 31일날 오전 2시에 작성완료했지요. 그래서 국회법 초안은 제헌국회의 국회법기초위원회에, 정부조직법 초안은 역시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에 제공되어 양 위원회에서는 우리들 초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형식적 심의만 하고서 제헌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켰지요. 헌법뿐이 아닙니다. (중략)

43) 특히 이들은 모두(역시 전규홍은 제외되어 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배속되었다.

44) '選委 사무국 부서', 1948.3.24.자 자유신문 1면.

45) 유진오·장경근·최하영·강명욱,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 『국회보』 제20호(국회사무처, 1958), 43-44면. 그밖에 같은 글에 실린 유진오, 장경근의 진술도 1948.5.에 최하영의 처가집에서 합숙하여 헌법초안을 기초하였다는 범위 내에서는 일치한다.

제2단계 심의시에는 장경근 의원, 이상기씨, 유진오씨와 소생의 4명이 헌법을 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주로 했지요.

2) 황동준의 진술⁴⁶⁾

(前略) 5월 14일에 필자(필자 주: 황동준)도 유선생(필자 주: 유진오)과 함께 그 장소(최하영씨 사택)에 출석하여 보니 그 장소에는 전기한 윤길중씨 외에 노용호씨, 최하영씨, 장경근씨, 차윤홍씨, 김용근씨가 상시로 참석하고 있었으며 이상기씨는 사법제도를 토론할 때에 몇 번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정윤환씨는 무슨 이유였는지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 장소에서는 그 때 제1회 국회 개회일인 5월 31일이 목전에 박도하였기 때문에 그 개회일까지에는 헌법 초안은 물론이고 국회법 초안도 작성하고저 약 10여일 간을 모두 밤늦게까지 그곳에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주야겸행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중략) 다음에 내가 그때 국회의 비능률적 운영에 못지않게 걱정한 것은 국회가 상설기관화하여 건국초의 정부가 국회의와의 응수에 忙殺되어 행정을 거의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국회법을 기초할 때에 국회의 개회 총 기일을 외국처럼 관례나 국회의 자율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또 국회의 의결로써 그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저 역설하였는데, 그 제안도 그와 같은 예가 선진 민주국가에 거의 없었다는 것과, 참석자들이 대개 국회후원 사상에 참여하였던 관계이었던 관계였는지 그 주장도 결국 묵살되어 버리고 겨우 국회법에 우선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회 총 일수를 규정하였으나, 그는 국회의 결의로써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결국 국회의 개회일수의 제한은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 (하략)

46) 황동준, 앞의 책, 326면, 328-329면. 그 밖에도 같은 책 341면에서는 특히 차윤홍이 “국회법은 거의 전담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등 숨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도 하나, 이를 뒷받침해 줄 다른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차윤홍이 전쟁기에 납북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3) 윤길중의 진술⁴⁷⁾

다음 헌법안에 이어 우리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을 또 초안했다. (중략)

다음엔 국회법인데 초안에는 정부와 국회관계를 규정한 국회법과 국회자체의 회의규칙을 따로 분리해서 작성하였는데 이박사(필자 주: 이승만)에게 설명하러 이박사는 두 가지 방안의 단일화를 주장했다.

「법률가들은 모든 것을 법률로만 묶으려고 복잡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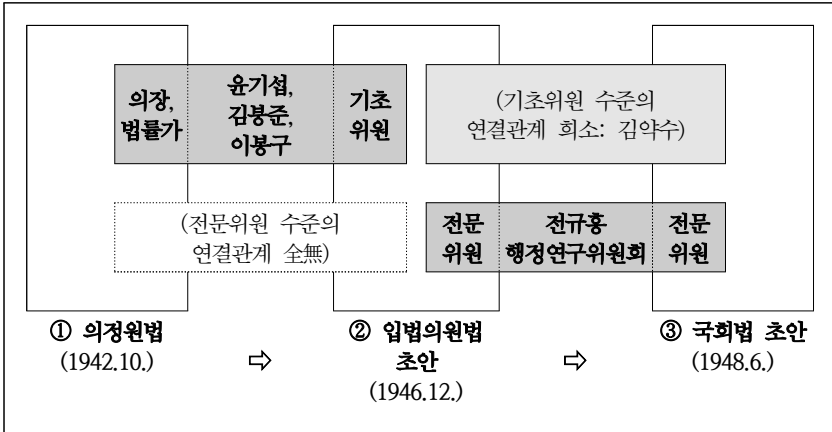
결국 국회규칙인 회의진행 방법과 처리등까지 국회법에 묶어 만들게 되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의원법과 국회법 초안 사이의 ‘인적 연쇄’ 관계는 이전의 의정원법과 입법의원법 사이에서의 그것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입법의원법의 기초과정에는 전문위원이 前歷 그리고 의정 경험 부재로 인해 영향을 미칠 여지가 거의 없어 기초위원의 역할이 거의 일방적으로 했던 반면, 국회법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는 거꾸로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초위원들 중에서도 임시의정원이나 입법의원에서 의정경험을 했던 인물이 소수나마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위원의 起草안에 대한 인적 영향이 입법의원법의 경우에 비해서는 다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圖示하면 아래의 <표 5>와 같고, 이는 뒤에서 보는 같이 국회법 초안의 일부 내용이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과는 상충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7) 윤길중, 앞의 책, 82-84면(특히 84면). 이 인용부분에서는 그밖에 정부조직법 초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경무부를 폐지하고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의 경무국으로 두자는 견해를 취하던 윤길중이 이승만을 설득한 과정도 술화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입안과정에서 윤길중, 혹은 행정연구위원회가 이승만과 긴밀하게 의사교환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표 5〉 의정원법·입법의원법·국회법 초안 기초의 인적 연쇄관계



IV.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내용상 차이와 그 요인

1. 국회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주요 變因으로서의 일본법

위에서 국회법 초안과 그 전의 입법의원법 사이에 기초주체(전문위원)의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법 초안의 기초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우선은 이를 입법의원법(특히 그 초안)과 비교해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를 낳는 가장 주된 변인은 일본에서 메이지(明治) 시대에 제정했던 『議會法』을 폐전 이후 대체하고자 1947년에 제정한 『국회법』(1947.4.30. 일본국 법률 제79호)과 『중의원규칙』(이하 ‘일본 국회법’, ‘중의원규칙’)이라는 점이 확인되는바, 그 영향은 ① 章의 편제라는 면에서나 ② 개별 조문의 내용에 관해서나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篇制상의 영향

먼저 章의 배치라는 면에서, 입법의원법-국회법 초안 사이의 간극은 의정원법-입법의원법 사이의 그것에 비해 다소 크다. ① 입법의원법 제11장에 해당하는 院의 행정과 經費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법 초안에서는 제2장에 모두 편입되었고, ②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장이 통째로 사라졌으며, ③ 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그들에 대한 질문에 관한 章이 새로 추가되었고, ④ 또한 종래의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의 관계’ 章과 ‘청원’ 章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국회법의 章들 중에서 兩院制를 전제로 兩院의 관계를 규정한 장 등과 같이 한국 국회법에는 해당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를 국회법 초안과 대비해 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이로써 위와 같은 국회법 초안의 편제변경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은, 이를 1947년 국회법의 그것과 일치시킨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의정원법·입법의원법 초안의 각 章 편성

| 장 표제 | | |
|--|---------------------------|-------------------------------------|
| 입법의원법 (1946.12.23. 초안) | 국회법 초안 (1948.6.) | 일본 국회법 (1947) |
| 제1장 소집, 개회, 휴회 | 제1장 집회,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 | 제1장 국회의 소집 및 개회식 제2장 국회의 회기 및 휴회 |
| 제2장 의 원 | 제2장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 | 제3장 임원 및 경비 |
| 제3장 의장, 부의장 | | 제4장 의 원 |
| 제4장 의원자격심사 (12.27. 수정과정에서 제2장으로 흡수) | | |
| 제11장 원의 행정 及 經費 | | |
| 제5장 위원회 | 제3장 위원과 위원회 | 제5장 위원 및 위원회 |
| 제6장 회 의 | 제4장 회 의 | 제6장 회 의 |
| 제7장 예산과 결산 | (해당 장·절 없음) | (해당 장·절 없음) |
| (해당 장·절 없음) | 제5장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 제7장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 제8장 질문 및 자유토의 |

| 장 표제 | | |
|---------------------------|-----------------------------|------------------------------------|
| 입법의원법 (1946.12.23. 초안) | 국회법 초안 (1948.6.) | 일본 국회법 (1947) |
| 제9장 청 원 | 제6장 청 원 | 제9장 청 원 |
| (단원제이므로 해당 장·절 없음) | (단원제이므로 해당 장·절 없음) | 제10장 兩 議院의 관계 제11장 兩院법규위원회 |
| 제8장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에 관계 | 제7장 국회와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 제12장 議院과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
| 제10장 청가, 사직 | 제8장 청가, 사직, 퇴직, 보궐과 자격심사 | 제13장 사직, 퇴직, 보궐 및 자격쟁송 |
| 제12장 警衛, 질서 及 방청 | 제9장 질서와 경호 | 제14장 기율 및 경찰 |
| 제13장 징 계 | 제10장 징 계 | 제15장 징 계 |
| (해당 장·절 없음) | (해당 장·절 없음) | 제16장 탄핵재판소 제17장 국회도서관 및 의원회관 |
| 제14장 보 칙 | 부 칙 | 부 칙 |

2) 구체적 규정내용에 대한 영향

한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록 1]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국회법 초안을 입법의원법에 견주어 볼 때의 차이는 일견, 입법의원법과 의정원법 사이의 차이에 비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는 과연 국회법 기초 위원장 서정희의 말대로, 국회법 초안이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일본의 국회법을 두루 참조하였기 때문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록 1]을 토대로 하여 국회법 초안의 내용 중 종래의 입법의원법에 없던 신규조항들을 추출하고, 이를 일본 국회법, 그리고 역시 1947년에 새로이 제정된 일본의 『衆議院規則』(이하 ‘일본 중의원규칙’)의 조항들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유사성을 보이는 정도를 넘어, 그 거의 전부가 일본의 조항들을 ①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거나, ② 수개의 조항 내용을 축약·단순화하거나 1개의 조항을 수개 조로 쪼개어 번역하거나, ③ 기타 약간의 변용을 가한 경

우임을 알 수 있다.⁴⁸⁾ 이러한 사례는 국회법 초안 전체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므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모아 일본의 조항들과 비교, 圖示해 보면 [부록 2]와 같다.

3) 영향에 대한 원인과 그 함의

일본 국회법·중의원규칙이 국회법 초안에 대거 반영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전술한 행정연구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들은 모두 일본 고등문관 출신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법보다 일본법의 동향에 상대적으로 밝을 수밖에 없었고, 위에서 열거한 국가들 중에서 지리·문화적으로도 일본이 가장 가깝다. 둘째로, 한국의 정부체제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시점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의 ‘의사규칙’, 더구나 그 최신의 내용을 기초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 물론 없지는 않으나 — 비교적 낮다.⁴⁹⁾ 셋째로, 입법의원법 초안이 입안되었던 1946년 말과 비교해 볼 때 일본 국회법·중의원규칙은 1948.6월 경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최신의, 혁신적인’ 외국 입법례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는 패전 이후의 일본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의 영향 하에서 새로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라는 점에서, 역시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기초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눈여겨볼

48) ‘변용’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i) 의원의 의석을 일본 중의원규칙은 ‘매 회기 초에’ 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를 ‘의원 임기초에’ 정하도록 한 점(제1조 제5항), (ii) 사무총장·參事에 대한 임명권을 일본 국회법과 달리 의장에게 부여한 점(제11조), (iii) 일본 국회법과 달리 議員이 3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도록 한 점(제14조 제2항), (iv) 일본 중의원규칙과 달리 위원회에 ‘幹事’를 두도록 한 점(제18조, 국회법 초안의 ‘간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職名은 ‘理事’이나, 국회법 초안은 위원회의 간사와 별도로 국회사무처의 상설직원으로 ‘理事’도 두고 있었다), (v) 일본 국회법이 議員 1인이라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국회법 초안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써만 이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점(제33조 제1항), (vi) 일본 중의원규칙에 비해 무기명투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점(제50조 제4항·제5항, 이는 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일본 중의원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 3]의 국회법 초안 제6조 해당부분을 참조), (vii) 일본과 달리 회의록과 속기록을 별도로 규정한 점(제53조, 제54조) 등.

49) 예컨대 국회도서관에서 위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13개국의 議事規則을 국역하여 입법참고자료로 최초 발간한 것은 1967년에 와서이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각국의회의 의사규칙(입법참고자료 제70호)』, 1967 참조. 또한 일본 이외의 외국(특히 서양諸國)의 의회법규에 관하여는 법령원문이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개설서 정도를 전문위원·기초위원들이 참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애당초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일본의 의회법제가 상호 영향관계 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⁵⁰⁾ 국회법 초안 형성에 일본 이외의 국가 법제의 영향이 없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이는 특히 — 앞서 보았듯이 국회법 초안과 골간을 같이하는 — 의정원법과 입법의원법에 대한 이들 외국입법체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⁵¹⁾

이와 같이 일본 국회법·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법의 기초내용 전체에 위 일본법의 영향이 가장 주요한 변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위 비교는 그 자체로서 ‘입법의원법과’ 국회법 초안 사이의 비교일 뿐이고, 그 비교결과 국회법 초안에서 달라진 내용의 대부분이 위 일본법으로부터 유래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이외의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 등 나머지 외국의 입법체가 그 외의 부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다만 이 연구에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 불과하다. 다만 위 외국 입법체들이 국회법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초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입법의원법 그리고 나아가 의정원법에 이들이 미친 영향을 소급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 연구가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50) 여기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은 아니나, 예컨대 일본의 경우 초기 의원내각제 의회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영국의 법제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戰後 국회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GHQ를 통하여 미국법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점에 관하여는 하세헌, 『전후 일본의 의회개혁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용』, 『한국정치학회보』 제 35집 제2호(한국정치학회, 2001), 261-282면(특히 267-275면)을 참조).

51) 우리 국회법 초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서만 보더라도 (i) 전원위원회 제도나 (ii) 법률안에 대한 讀會 제도들은 의정원법과 입법의원법에 공히 채택되어 있지만, 이를 1947년의 일본 법제로써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

2. 당시의 헌법논의와 관련된 국회법 초안의 내용상 특이점

앞서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국회법 초안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큰 원인으로 일본법의 ‘직수입’을 들었다면, 다음으로는 국회법 초안의 입안 당시에 이루어지던 헌법논의의 양상으로 인해 국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특유한 편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국회법 초안이 성안되던 1948.6.초에는 입법의원법이 제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나, 행정연구위원회·유진오·권승렬 등의 헌법안이 연달아 출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내용의 변천이 명확히 확인되는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구상과 관련되는 안으로는, ① 앞서 보았듯이 행정연구위원회가 1946.3.에 독자적으로 준비한 헌법초안(‘행정연구위원회안’)⁵²⁾, ② 前述과 같이 1948.5. 행정연구위원회의 최하영 등이 유진오와 회합하여 공동으로 헌법안(‘공동안’),⁵³⁾ ③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 회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타 기초위원들과 함께 공동안을 底本으로 삼아 논의 끝에 수정하여 국회 본회의에 이송한 안(‘본회의 이송안’)을 들 수 있다([부록 3] 참조). 그 중에서도 공동안의 경우 유진오와 최하영 등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1948.5.31.에 그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동년 6.4.부터 6.7.까지 이루어진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공동안과 일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잠정적인 가설 하에 국회법 초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은, 공동안과 모순없이 부합된다. 국회법 초안 제5장에서는 ‘국무위원’, 그리고 특히 1946년의 행정연구위원회안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정부위원’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i) 행정부가 국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52) 행정연구위원회안의 작성경과에 관하여는 김수용, 앞의 책, 29면 이하를 참조. 행정연구위원회에서 1946.3.1.에 작성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진오, 앞의 책, 195면 이하(附 III. 행정연구회의 헌법초안)에 수록되어 있는 案으로서, 표제는 『한국헌법』이다.

53) 공동안의 작성경과에 관하여는 김수용, 앞의 책, 227-240면을 참조. 공동안의 全文은 유진오, 앞의 책, 207면 이하(附 IV.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헌법초안)에 수록되어 있고, 표제는 『한국헌법(초안)』이다.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63조), (ii) 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질문, 즉 국회의 대정부질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고(제5장), (iii)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서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iv) 나아가 국회가 “해산”된 경우의 회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2항).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행정연구위원회안과는 모순되면서, 공동안과는 부합한다. (a) 행정연구위원회안은 정기회·임시회를 불문하고 회기를 “4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제2항), 국회법 초안은 국회의 회기를 정기회 90일(但 국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음),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4조). (b) 또한 행정연구위원회안은 국회의 의사정족수를 의원 總數 과반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헌법으로써 別로히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제7조), 국회법 초안은 예컨대 의장·부의장 선거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하도록 하고 있어서(제6조 제1항) 이에 들어맞지 않고, 이는 공동안이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결정족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c) 그 밖에도 행정연구위원회안은 공동안과 달리 국회의 議員에 대한 자격심사권과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권한의 행사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초안의 규정들은 그 헌법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들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은 공동안과는 모순된다.⁵⁴⁾

첫째로, 국회법 초안은 공동안이 채택한 “인민”이 아닌 “국민”이라는 용어를 일관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 두 용어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본회의 이송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

54) 아래에서 드는 점들 이외에, 국회법 초안은 공동안과 달리 국회의 부의장을 “2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헌국회가 1948.5.31. 개회일에 ‘국회구성과 국회준칙에 관한 결의안’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을 2인으로 늘리자는 이정래 의원의 動議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과 관련된다(이에 관하여는 『제1회 국회속기록』(대한민국국회, 1948) 제1호(5.31.), 4면을 참조). 따라서 이 점은 논외로 한다.

졌고, 그 결과 “국민”을 사용하기로 결론이 난 것은 1948.7.3.의 국회 제22차 본회의에 이르러서였다. 그럼에도 국회법 초안은 이보다 훨씬 앞질러 “국민”을 채택한 것이다.

둘째는, 국회법 초안이 종래의 ‘예산과 결산’ 章을 통째로 삭제한 점이다. 이 중 결산의 경우는 공동안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안 자체가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과 달리, 내각이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해제’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제101조 제2항), 국회가 여타의 인과는 다른 특별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는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⁵⁵⁾ 그러나 적어도 예산의 경우, 공동안에 따른다면 —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 예산안은 법률안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국회법에 그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전의 입법의원은 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해 예산·결산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원법에서 이들에 관한 章을 따로 두었고, 전술했듯이 동법의 기초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은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기도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삭제는 착오에 기인했다기보다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그 이유에 관하여는, 위 전문위원들이 대폭 ‘참작’한 일본의 국회법·중의원규칙이 예산안의 심의에 대하여 별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⁵⁶⁾에서 그 존치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⁵⁷⁾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와 별개로 국회법 초안의 이러한 태도는 1948.9.10.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교정되어, 예산안의 심의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은 제4장 ‘회의’의 제6절로 부활하였다.

55) 그렇기 때문에 1948.10.2. 공포된 개정 국회법의 제4장 제6절도 그 표제를 ‘예산안’이라고만 하고 결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6) 참의원규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7) 그밖에, 헌법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것이 전제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 이 경우 국회법에서는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여타 법률안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헌법안 중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것은 1946년의 행정연구위원회안에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률로써 此를 정함”이라 규정한 것(제43조 제2항)이 유일한데, 행정연구위원회는 공동안으로써 이미 입장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위 가정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매우 낮다고 본다.

위의 두 가지 점이 비록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제도적 함의를 가지고는 있으나,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헌법이 국회법 초안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면 단순히 字句를 수정하여 헌법대로 시행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종속변수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셋째 점 즉 국회법 초안이 공동안과는 달리 단원제를 규정하였다는 점은, 헌법이 만약 양원제를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위 두 예와 달리 ‘일단 현존하는’ 제헌국회가 해체되고 새로이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위상을 달리한다.

국회법 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단원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밝혀줄 사료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와 동시에 활동을 개시한 ‘인접’ 위원회인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의 논의상황을 보면 그 일단은 엿볼 수 있다. 同 위원회에서는 1948.6.4. 제2차 회의에서부터 양원제에 관한 이견이 표출되었고, 그 이유는 단일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경우 국회 구성은 양원제로 하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던 반면, 한민당 계열의 기초의원들은 공동안대로 양원제를 채택할 경우 의사의 지연과 경비의 팽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봉암은 참의원(상원)이 봉건적 잔재라는 이유로 양원제에 각각 반대하였다.⁵⁸⁾ 그리고 6.10. 제6차 회의에서 논란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12:10(혹은 11:9)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단원제를 헌법에 채택하기로 하였다.⁵⁹⁾ 국회법 초안의 기초과정에서도 유사한 정과

58) 한민당 소속이었던 서정희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장은 1948.6.9. 국회 본회의 제6차 회의에서 국회법 초안을 단원제로 기초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 있어서 양원제가 어떤 시간에 실현될는지 또는 지금 양원제가 헌법에 나올는지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지금 현하에 우리가 가진 이 국회 기관을 걸쳐서 국회법을 기초할 수밖에 없고 또 기초하게 된 것이올시다. 미연에 새 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런 법을 기초하기도 하겠지 마는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제1회 국회속기록』(대한민국국회, 1948) 제6호(6.9.), 13면).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위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에 관하여는 — 정부형태 역시 미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공동안을 충실히 사전에 반영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59) 김수용, 앞의 책, 270-271면 및 278-280면. 이와 달리 당시의 기초위원장인 서상일은 위 기초위원회에서 단원제로의 의견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1948.6.21.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출석해서 단원제를 역할하면서였다고 순화하나(서상일, 『개헌론』, 『국회보』 창간호(국회사무처, 1949), 27-29면)

적·이념적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양원제의 채택은 1948년 국회가 새 헌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다음 국회에 넘겨줘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단원제의 채택 여부는 同 국회가 그 역할을 ‘제헌의회’에 그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제정 이후에도 입법부로서 기능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애당초 1948년 국회의원들을 선거하게 한 근거인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회 개회시부터 2년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제47조 前文. 국회의 ‘해산권자’가 이후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後文은 무의미하다). 이에 따라 선거인도 피선거인도, 위 기간 동안의 의원임기 동안 존속하는 초대 국회를 想定하였고, 이후 제정된 1948년 헌법 제102조(60)가 정한 의원임기는 위 『국회의원선거법』이 규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초대 국회의원들을 선거할 당시부터 ‘1948년 국회’는 헌법제정 이후로도 1950년까지 존속할 것으로 豫定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기대가 아니라 엄연히 ‘규범’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헌법제정 이전의 규범에 헌법이 구속되어야 할 규범적인 이유는 없고, 만약 (i) 헌법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를 양원제로 새로 구성하는 데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후, (ii) 그러한 내용을 제102조의 자리에 대체하고, (iii) ‘그에 따라’ 헌법제정 이후에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을 기초하는 각 위원회에서는 모두 1950년까지의 ‘규범적으로 약속받은’ 임기를 채우기로 하는 의사가 우세하였고, 그랬던 이상 국회의 院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즉 단원제를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利害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행정연구위원회 회원들의 입장과는 결과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여러 보도내용과 상충한다.

60)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V. 결론

헌법제정에 앞서 국회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의사절차 규범을 마련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정한 국회법 초안은, 의정원법으로부터 입법의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연쇄의 마지막 고리를 이룬다. 이러한 연쇄적인 전승은, (i) 의정원법으로부터 입법의원법으로는 주로 기초위원을 통해서, (ii) 그리고 입법의원법으로부터 국회법으로는 주로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전문위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법 초안으로의 전승 과정에서, 행정연구위원회를 배경으로 하여 구성된 전문위원진은 입법의원법의 제정 이후의 ‘최신 입법례’인 1947년의 일본 국회법과 중의원규칙 내용을 국회법 초안에 대거 첨가하였고, 이는 일본법을 접하고 다루는 데 익숙한 인물들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특성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의 제정이 그 자체로서 헌법제정의 基礎작업으로서의 성격도 띠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은 행정연구위원회가 제시한 헌법제정 시안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법 초안에 첨가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단원제의 채택이었다. 이는 며칠 뒤인 1948.6.10.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단원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단원제를 先取한 것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헌법제정 논의의 판도에도 일말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법이 의사규칙으로서 가지는 독자적 내용요소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의정원법으로부터 국회법에 이르는 발전과정에서의 ‘마지막 덧칠’이 일본법으로써 이루어진 점을 밝혔다. 이는 日帝로부터의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제정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國會史의 어두운 시작을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그러한 ‘덧칠’을 벗겨내고 난 그림이 어떠한 물감으로 그려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다 폭넓은 탐색을 시작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1947년의 일본법 이전에 국회법의 내용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 특히 입법의원법 그리고 더 나아가 의정원법의 형성과정

을 보다 면밀하게 궁구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바, 이는 예컨대 — 1947년의 일본법에서는 전혀 채택하지 않은 — 讀會나 전원위원회 제도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법의 연원을 보다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회의사록 권1』, 대한민국국회, 1948.
-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1948.5.10.~1972.1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2권(임시의정원 I),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제1회 국회속기록』, 대한민국국회, 1948, 제1호(5.31.), 제5호(6.8.), 제6호(6.9.)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2권(임정편 II), 국사편찬위원회, 1971.
-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1』, 여강출판사, 1984.
- _____,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2』, 여강출판사, 1984.
- 류지성 외, 『분단전후 남북헌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손병권 외,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 윤길중, 『청국 윤길중 회고록: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 이길상 편, 『미군정청 관보 Vol. No.3(Oct. 1946-Sept. 1947)』, 원주문화사, 1992.
-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황동준, 『민주정치와 그 운용』, 한일문화사, 1962.

2. 논문

- 김영미, 「1946년 입법의원 선거」, 『국사관논총』 제7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127-159면.
-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1996,

69-90면.

서상일, 『개헌론』, 『국회보』 창간호, 국회사무처, 1949, 27-29면.

송순섭,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에 관한 소고』, 『법사학연구』 제58호, 한국법사학회, 2018, 117-148면.

유진오 · 장경근 · 최하영 · 강명옥,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 『국회보』 제20호, 국회사무처, 1958, 32-44면.

이재호,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127-169면.

하세현, 『전후 일본의 의회개혁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용』,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261-282면.

3. 신문자료

『대동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독립신문』, 『민중일보』, 『수산경제신문』, 『자유신문』

4. 기타 인터넷자료

『Lexis-Nexis』(<http://www.lexisnexis.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Formative Factors of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a view to the Rule of Assembly for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

Choi, Ho-Dong*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the Draft') which was designed as per the need to organize and regulate a legislature before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s the last of a long series of such laws consisting of (a)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1919), (b) the Rule of Assembly for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1946), and (c) the National Assembly Act (1948).

Whereas the passing down of their contents was done mainly by the members of drafting committee in the case of (a) to (b), the transmission from (b) to (c) was primarily by the hands of the expert advisors who were mainly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ARCA').

On one hand, this is a major reason that the Draft imported the Japanese 1947 National Assembly act together with the Rule of the Lower House. On the other,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time made the Draft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scheme of ARCA, which is exemplified in the adoption of

* Attorney at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 Pacific Law Institute

single chamber system. This means that the drafting committee made their point clear as to the overall character of the 1948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continuity from the Provisional Congress to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o be looked for in a new light, and with closer attention, and that the Rule for KILA can give certain implications in the search.

[Key Words]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Rule of Assembly,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부록 1]

임시의정원법(1942) · 입법의원법(1946-48) ·
국회법(1948)의 내용대조표

* 굵은 글씨는 각 법률 '최종' 내용임 / 국회법 항목의 '추가', '신설'은 모두 1948.9.10. 개정안의 것임.
** 국회법 항목의 밑줄·삭선은 국회법 초안(6.7.)에 대하여 개정안(9.10.)이 각각 추가·삭제한 내용임.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p>제1장 집회</p>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8조 ①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중순에 입 시정부 소재지에서 스스로 소집 및 폐회 하여 스스로 기일을 정함. ② 단, 원의 결의와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임시의회를 소집함.)</p>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3 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 하며 의원자격과 선거의 疑議에 대하 여 최고판결권을 가짐.)</p> <p>제1조 본원 의원은 정기나 임시를 물론 하고 기일 전 3일 이내로 到院함을 요함 (※ 이 조항은 제1장 집회에 속함)</p> <p>제2조 본원은 개회일 및 폐회일에 의 원이 집회하여 개원식과 폐회식을 거행함</p> <p>제4조 新到의원은 당선증서를 원에 제 출하여 심사등록케 함</p> | <p>제1장 소집, 개회, 휴회(초안) ⇨ 개회, 폐회, 휴회(1946.12.27. 수정) ⇨ 개회, 폐회, 휴회, 회기(1946.12.30. 수정)</p> <p>제1조 ① 본원의 소집은 본원이 스스로 행함. ⇨ (1946.12.27. 수정) 본원의 개회와 폐회는 본원이 스 스로 함. ② 의장은 소집기일을 정하여 그 10일 전에 원의 공보로써 공고함. ⇨ (1946.12.27. 수정) 본원이 개회 할 때에는 의장이 규정된 소집기일의 10일 전에 원의 공고로써 공고함. (※ 이후 군정법령 영문판보에는 '15일 전("fifteen days in advance")'으로 게재됨.) ③ (1946.12.27. 신설) 개회와 폐회를 할 때에는 개원식과 폐원식을 행함.</p> <p>제6조 (초안 제5조) ① 의원은 소집된 기일에 본원에 집함을 요함 (1946.12.27. "집합하여야 함"으로 수정). ② 의원은 기일 전 3일까지에 당선증서와 이력서를 원내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p> <p>(※ 군정법령 제118호 제9조 (임기) ③ 의원은 議院 소집 기일 전 3일 내에 당선증서와 이력서를 의원에 제출하여 등록하며 그 개회일에는 출석 보고함을 요함.(1947.3.6. 신설))</p> | <p>제1장 집회,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p> <p>제1조 ①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 는 국가가 스스로 행한다. ② 개회 또는 폐회를 할 때에는 개 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③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 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 의원은 임 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 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추가: "지정 또는") 공고 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 에 집회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초에 의 장이 정한다. ⇨ 의원의 의석은 매 회 기 초에 추첨으로 정한다.</p> <p>제2조 ① 국회의 임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신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집회 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p> |
| <p>제3조 본원은 회기일에 휴회함을 득하 되 4개일을 廢함을不得함</p> | <p>제2조 ⇨ (1946.12.27. 신설) 제3조 ① 본원은 그 소기의 목적 - 조선전체의 입 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통일조 신국가가 속히 건립되기를 위 하여 우리 독 립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제정하 야 국가의 기</p> <p>(1946.12. ⇨ (1946.12. 27. 수정) 30. 수정) 제2조 본 원의 회기는 제3조 본 원의 회기는</p> | <p>제3조 국회는 그 결의로 20일 이내 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국회의 휴회중 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p> <p>초안 제4조 ①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 <p>본조직을 확립하여 행정권의 이양을 받아 민족자주의 實을 擧하며 정치의 쇄신과 경제의 재건으로써 민주문제를 해결하여 대중의 복리를 증진하며 선린우호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며 연합국에 항구적 평화책을 적극 지지함 등 - 완수할 때까지 계속 개원함.</p> <p>② 본원은 원의 결의로 30일 이내, 의장의 직권으로 7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음.</p> <p>③ 휴회중 행정수반의 요구나 3개 이상의 상임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개최함.</p> <p>통일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독립국가 건설에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제정하여 국가의 기본조치를 확립하며 행정권의 이양을 받아 민족자주의 實을 擧하며 정치의 쇄신과 경제의 재건으로써 민주문제를 해결하여 대중의 복리를 증진하며 선린우호의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연합국의 항구적 평화책을 적극 지지하는 일들을 달성할 때에 행함.</p> <p>남북이 통일되어 민주정부 수립될 때에는 온 전국적 보통선거에 의하여 새 입법부가 성립될 때까지로 정함.</p> | <p>② 국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해산 후의 국회의 회기는 90일 이내로 한다.</p> <p>(※ 속기록에는 위 “30일”이 “30月”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日”의 오타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4조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p> |
| | | <p>제2장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 (의장, 부의장에 관한 부분)</p> |
| <p>제3장 의장, 부의장</p>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제반 내규를 정함. 의장 부의장 선거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하되 2회 투표에서도 미결될 때에는 다수로 정함.)</p> | <p>제3장 의장, 부의장</p> <p>제10조 (초안 제6조) 본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함.</p> <p>(※ 군정법령 제118호 제10조 (동 의원의 창립총회, 규정채용, 의장선거)</p> <p>② 동 議院은 그 議員 중에서 의장을 선정함.</p> | <p>제5조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그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p> <p>(개정안에 추가되었으나 부결된 부분 : “단, 의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제6조 ①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p>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p>③ 의장의 선거는 정원수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함.)</p> <p>제11조 (초안 제7조)</p> <p>① 의장, ⇨ (1946.12.2 7. 수정) ① (1946.12.30. 수정) ① 의장, 부의장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의장은 단기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결정함.</p> <p>② 2차 투표에도 과반수에 달치 못할 때에는 3차 투표를 하여 從多數로 함.</p> <p>③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함.</p> | <p>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p> <p>② 집회된 의원이 전함 정수에 달한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개시한다.</p> <p>③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p> <p>④ 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異動이 미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p> <p>⑤ 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p> <p>⑥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p> <p>⑦ 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함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6조 입시의정원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처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의 휴가와 방정자를 허가함.)</p> | <p>제12조 (초안 제8조)</p> <p>의장은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원외에 대하여 원을 대표하고 원내행정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1946.12.27. ‘지휘’로 수정)함. (※ 이후 군정법령 영문판보에는 ‘지휘감독’(supervise and control”)으로 게재됨.)</p> | <p>제7조</p> <p>①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p> <p>②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 ⇨ (항 삭제. 아래 ③으로 이동.)</p> |
| <p>제14조 의장은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원외에 대하여 원의 대표가 되며 비서장 이하의 소속의원을 지도감독함</p> | <p>제14조 의장은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원외에 대하여 원의 대표가 되며 비서장 이하의 소속의원을 지도감독함</p> | <p>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의견(⇨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p> |
| <p>제38조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할 시에 의장이 출석발언함을 득하며, 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經하면 출석발언함을 득하되, 병히 표결에는 참여치 못함</p> | <p>제29조 (초안 제35조)</p> <p>의장은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1946.12.27. “요청으로” ⇨ 12.30. “요청 또는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음.</p> | <p>(신설) ③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대리케 한다’).</p> |
| <p>제15조 의장이 유고할 때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부의장이 병히 유고할 때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그 직권을 대리케 함</p> | <p>제13조 (초안 제9조)</p> <p>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권을 대리함.</p> | <p>⑤ 국회는 임시의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동의로써 한다.</p> |
| <p>제16조 의장, 부의장이 다 결원될 때는 另 補선함</p> | <p>제14조 (초안 제10조)</p> <p>의장, 부의장이 並히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사무를 대리함(1946.12.27. ‘대리케 함’으로 수정).</p> |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22조 의장이 위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한 후 전조(※ 정계)의 표결에 의하여 면직함.)</p> <p>제17조 의장, 부의장이 위법한 정상이 있을 때는 총의원 5분지 1 이상의 제의로 징계위원회에 교부심사한 후에 원의 결의로서 정하되, 만일 총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의원이 위법으로 認할 때는 可 解職別選함</p> | <p>제15조 (초안 제11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원법에 위반할 때에는 제적의원 5분지 1 이상의 제의로 징계 위원회에 附하여 심사한 후 의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해직할 수 있음. (1946.12.27. 추가 : “제적의원 3분지 2 출석원 과반수의 同數로 해직할 수 있음.”) (※ 추가된 후문의 취지는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군정법령 영문관보에서는 후문을 “For this purpose two-thirds of the members duly qualified and seated shall constitute a quorum.”이라 게재하여, 이를 前文에 대한 가증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옮기고 있다.)</p> <p>(※ 군정법령 제118호 제4조 (봉급) ① 동 議院 議員은 대법원 대법관과 동액의 보상을 받음.)</p> <p>(※ 원법의 ‘제2장 의원’은 아래에 있으나, 右 국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은 아님.)</p> | <p>(의원에 관한 부분)</p> <p>제8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p> <p>제9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철도(추가 : , 선박과 항공기)에 승차(⇒ “승용”)할 수 있다.</p> <p>제10조 의원은 그 임기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除하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p> |
| <p>제10장 비서국과 원의 經費</p> <p>제101조 본원에 비서국을 置하고 비서장 1인, 비서 2인과 서기 3인을 置하여야 文讀, 회계, 기록, 편집 및 일체 庶務를 장리케 함</p> <p>제103조 비서外 庶務規程은 의장이 정하여 공포함을 득함</p> | <p>(초안 제11장 ⇨) 제10장 원의 행정 及 經費</p> <p>제77조 (초안 제81조 ⇨ 1946.12.27. 제75조) ① 본원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서처, 사무처를 置함. ② 비서처에는 비서장, 부비서장 각 1인, 비서, 서기, 속기원 약간인을 置하여 文讀, 기록, 속기, 편집, 印信에 관한 일체사무를 장리함. ③ 사무처에는 사무장, 부사무장 각 1인, 과장, 서기, 경위, 雇員 약간인을 置하여 재무, 회계, 인쇄, 통계, 경위, 기타 庶務 일체사무(1946.12.27. “일체 庶務”로 수정)를 장리함. ④ 각 과의 사무분속 及 其 직원은 별표와 如함 (1946.12.27. “별표로 別定함”으로 수정).</p> | <p>(사무총장 및 경비에 관한 부분)</p> <p>제11조 ① 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p> |
| <p>제102조 비서장 及 소속직원은 의장이 임면함</p> | <p>제78조 (초안 제82조 ⇨ 1946.12.27. 제76조) ① 각 처장 及 소속직원은 의장이 임면함. (1947.12.30. 신설) ② 의장은 의장실에 비서 약간인을 置함.</p> | <p>제12조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국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p>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제104조 본원의 경비는 국비로 지출함 | 제79조 (초안 제83조 ⇨ 1946.12.27. 제77조) 본원의 經費는 국비로 지출함. | 제13조 ①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에 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
| 제105조 ① 경비지출數項은 下와 如함 1. 의원비(세비, 교제비, 여비) 2. 의회비 3. 비서국비 4. 예비비 ② 전 각항의 지출방법은 별정함 | 제80조 (초안 제84조 ⇨ 1946.12.27. 제78조) 본원의 예산과 결산은 원이 스스로 정함. | |
| 제4장 위원회 | (초안 제5장 ⇨) 제4장 위원회 | 제3장 위원과 위원회 (개정안에 게재되었으나 부결된 제목 : "제3장 각과 교섭회, 위원회와 임원회") |
| 제18조 임시의정원은 左列 3종의 위원회를 설치함 1. 全院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특별위원회 | 제16조 (초안 제15조) 본원은 左의 2종의 위원회를 置함. 1. 전원위원회 ⇨ (1946.12.27. 수정) 2. 상임위원회 3. 특별위원회 1. 상임위원회 2. 특별위원회 | (개정안에 신설조문으로 추가되었으나 부결된 조문 : 제14조 ① 의원은 각과의 소속원 수로써 각과 교섭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는 회의의 연서한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과 교섭회의 구성원 수는 2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제35조 상임위원은 특별위원회에 피선함을 득함 제41조 본원은 특별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院議로서 선정함 제43조 특별위원회에서 본 원법 제34조로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초안 제30조 ⇨ (1946.12.27. 수정) 제17조 ① 상임위원은 院에서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이를 전형보고함. ② 전형위원은 연기무명투표로 선출함. 단, 동점자 2인일 때에는 추첨에 의함. 초안 제31조 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을 겸임하여도 무방함. ① 상임위원은 院에서 전형위원 9인(1946.12.30. "15인"으로 수정)을 선출하여 이를 전형보고케 함. ② 전형위원은 연기무명투표 從多數로 선출함. 단,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함. ③ 의원은 2개 이상의 위원을 겸임하여도 무방함. | 제14조 제14조에 左의 위원을 둔다. 1. 상임위원 2. 특별위원 ② 상임위원은 의원의 임기초에 국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중 재임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필요에 의하여 2개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은 국회에서 선거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의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 (항 삭제, 아래 ④로 이동.) (신설) ③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기타 다른 공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특별위원은 (추가 :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의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
| 제25조 전원위원회의 위원은 全院의 위원으로 함 | (초안 제23조) 전원위원회는 총 ⇨ (1946.12.27. 삭제) 의원으로 구성함. | 초안 제15조 ① 국회는 필요에 의하여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초안 제24조) 전원위원회는 의 ⇨ (1946.12.27. 삭제) 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 ② 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의하야 토의를 經하지 않고 원의 결의로써 정함. | ③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거한다. ↓ |
| 제26조 전원위원장의 선거는 원의에 의하야 정하되 대 회기 개회의 초에 행함. 단, 의장, 부의장은 피선거함을 不得함 | | 제15조 ① 국회는 특별한 안전을 부락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로 개회한다. ③ 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④ 전원위원장은 회기초에 국회에서 제7조제5항에 준하여 선거한다. ⑤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
| 제27조 ① 중요한 문제를 전원위원회에 부하야 심의케 하고자 할 때는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를 결정함을 요함 ② 단, 전항의 경우에 의장은 즉시 개회 혹은 개회기일을 예정하야 의사일정에 기재함을 득함 | | |
| 제28조 전원위원회를 開할 때는 의장은 의장석을 退하고 전원위원장이 의장이 됨 | | |
| 제29조 전원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제33조에 정한 위원 科別의 순서로 각 該 위원장이 대리함 | (초안 제25조)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정한 상임위원회체의 순서로 각 該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함. ⇒ (1946.12.27. 삭제) | |
| 제30조 전원위원장이 토른코사 할 때는 前條 대리자로 위원을 대리케 함 | | |
| 제31조 전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기 불가능 할 때는 의원으로부터 의장을 復席케 하야 延會를 선언하고 의사일정을 改定함을 득함 | (초안 제26조) 전원위원회는 의사의 다수합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의사의 결과를 보고함. ⇒ (1946.12.27. 삭제) | |
| 제32조 전원위원회가 개회된 시에 원법을 위배하거나 議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가 有할 때는 의장이 위원장의 보고를 待치 아니하고 可 復席하야 院則 제109조에 의함 | (초안 제27조) 전원위원회에서 원법에 위반하거나 議場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의장은 위원장의 待기를 待하지 않고 復席하야 위원회를 중지 또는 散會시킬 수 있음. ⇒ (1946.12.27. 삭제) | |
| 제33조 본원은 각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차 회기에 左列 各항의 상임위원 각 5인을 원의에 의하야 선정함 1. 제1과(법제) 2. 제2과(내무·외무) 3. 제3과(재무) 4. 제4과(군무) 5. 제5과(교통) 6. 제6과(예산·결산) 7. 제7과(청원·정계) 8. 제8과(교육·實業) | 초안 제28조 본원에 좌의 상임위원회를 附함. ⇒ (1946.12.27. 수정) 제31조 상임위원회는 좌와 같이 분함. 1. 법제사법위원회(15인) 제1분과회(10인) 법제 제2분과회(5인) 사법 2. 내무경찰위원회(12인) 제1분과회(6인) 내무일반, 행정조직, 자치 제2분과회(6인) 경찰, 警察조사 제3분과회(6인) 警察일반 3. 재정경제위원회(21인) 제1분과회(9인) 예산, 결산 제2분과회(6인) 경제일반, 통화, 금융 제3분과회(6인) 전매 (1946.12.27. "세무" 추가) 4. 산업노동위원회(15인) 제1분과회(7인) 5. 외무국방위원회(12인) 제1분과회(6인) 6. 문교후생위원회(12인) 제1분과회(6인) | 제16조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1인(추가: "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서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케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법제사법위원회 20인 2. 외무국방위원회 20인(⇒ "30인") 3. 내무치안위원회 20인 4. 재정경제위원회 40인 5. 산업노동위원회(⇒ "산업위원회") 40인 6. 문교후생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20인 7. 교통재신위원회 15인(⇒ "20인") 8. 자적심사위원회 15인(⇒ "정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p>인) 공업, 광업, 인) 의무 학교, 종교, 敎化 상업, 무역 제2분과회(6 제2분과회(6인) 제2분과회(8 인) 국방 후생, 보건 인) 농지, 농림, 수산, 노동조직, 기타(1946.12.27. "기타" 삭제)</p> <p>7. 운수제신위 8. 청원징계 위원회(10인) 위원회(10인) 제1분과회(5 제1분과회(5 인) 운수 인) 청원 제2분과회(5 제2분과회(5 인) 제신 인) 징계</p> | <p>제자격위원회 20인) 9. 강제위원회 15인(삭제) ② 각 위원회는 결의로 사무처리상 분과를 두고 분과에 主軸을 둘 수 있다. ③ 주시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應당 한다.</p> |
| | <p>초안 제38조 특별위원회는 좌에 열기한 이외에는 필요에 의하여 본원의 결의로 설치함. ⇨ (1946.12.27. 수정) 제32조 특별위원회는 좌와 如히 分함. 단, 필요에 의하여 원의 결의로써 증설할 수 있음.</p> <p>1. 자격심사위원회(18인) 제1분과회(6인) 의원자격심사 제2분과회(12인) 3등급 이상 관리 심사 2. 입사전법, 입사전거법 기초위원회(9인) 3. 행정조직법 기초위원회(9인) 4. 식량대책위원회(9인) ⇨ (1946.12.30. 수정) 4. 식량及물가대책위원회(9인) 5. 적산대책위원회(9인) (1946.12.30. 신설) 6.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 법,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기초위원회(9인)</p> | |
| | <p>(1946.12.30. 신설) 제33조 전2조의 위원회와 분과회人數는 원의로 증감할 수 있음.</p> | |
| <p>제20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선정 하야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保持함</p> <p>제42조 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지명에는 지명의 先으로, 公選에는 最多點으로 위 원장이 됨</p> | <p>제20조 (초안 제1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호선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保 持함.</p> | <p>제17조 ①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매 정기회 초에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1년 재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 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 지한다.</p> |
| <p>제19조 위원회의 의사는 본원이 위탁한 사건에 한함</p> | <p>제18조 (초안 제16조) 위원회는 본원에서 부탁한 사건에 한하여 심의함.</p> | <p>제18조 ① 전원위원회는 회기중 국회에서 특히 부탁한 안전을 심사한다. ⇨ (삭 제. 위 제15조로 이동) ②③ 상임위원회는 부탁된 안전을 심사하는 외에(⇨ "심사하며") 그 부 문에 속한 입법자료의 수집조사와 입 안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의로 폐 회중이라도 계속될 수 있다.</p>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p>㉓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특별히 부탁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p> <p>㉔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약간의 간사를 둔다.</p> <p>㉕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㉖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㉔,㉕,㉖를 아래 제19조로 분리.)</p> |
| <p>제36조 상임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여 임시대리케 함</p> | <p>제28조 (초안 제33조) 본회의에는 그 議事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함.</p> <p>제24조 (초안 제32조) 상임위원장(1946.12.27. ‘위원장’으로 수정)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여 임시대리케 함.</p> | <p>(신설) 제19조 ①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약간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p> |
| | <p>제19조 (초안 제17조) 위원회는 필요로 罷할 때에 의장의 동의를 득하여야 비서, 서기 또는 촉탁(1946.12.27. “전문위원”으로 수정)을 置할 수 있음.</p> | <p>제19조제20조 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삭제)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錄事를 둔다. (신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㉗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p> |
| <p>제34조 ①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문제로 數料 이상의 협동심사할 필요가 유할 때는 各該科의 同意로서 연합위원회를 開함을 득함 ② 단, 연합위원회를 開할 때는 전조에 정한 위원회의 순서로 위원장을 정함</p> | <p>제27조 (초안 제29조) ① 상임위원회(1946.12.27. “위원회”로 수정)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연석회의를 開할 수 있음. ② 연석회의의 위원장은 前條(1946.12.27. “제31조 또는 제32조”로 수정)에 정한 위원회의 순위에 의하여 그 위원장이 此에 任함.</p> | <p>제20조제21조 ①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석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의 호선으로 결정한다.</p> |
| <p>제21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면 개최함을 不得함</p> | <p>제21조 (초안 제20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면 개최하지 못함.</p> | <p>제20조제22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
| <p>제22조 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되는 때는 위원장이 處定함</p> | <p>제22조 (초안 제21조) 위원회의 議事는 출석위원의 과반수(1946.12.27. “의 同意” 추가)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함.</p> |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제23조(신설, 아래 초안 제24조 ①로부터 이동.)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
| | | 제22조제24조 ①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아래 초안 제24조 ②로부터 이동.)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안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제23조 위원회는 방청을 불허함 | (초안 제21조) ⇨ (1946.12.27. 삭제) 위원회는 其 결의에 의하여 의원의 방청을 허할 수 있음. | 제23조제25조 ①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 | 제24조(삭제)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 위 제23조로 이동.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 제24조 ②로 이동. |
| 제37조 ① 상임위원회의 개최는 각 該 위원장이 정하되 본회의와 동시에 개최함을不得함 ② 단, 본원의 허가를 득한 때는 此限에不在함 | 제25조 (초안 제34조) 상임위원회(1946.12.27. “위원회”로 수정)의 개최는 당해 위원장이 정하되 본원의 허가없이 본회의와 동시에 개최하지 못함. | 제25조제26조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의 시간과 동시에 개최할 수 없다. |
| 제39조 본원은 심사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케 하되, 만일 위원회가 無故히 지연할 때는 위원을 改選함을 득함 | 제30조 (초안 제36조) 본원은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의 결과를 보고케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지연할 때에는 위원을 改選할 수 있음. | 제26조제27조 ① 국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 제24조 각 위원장은 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서 본원에 보고함 | 제23조 (초안 제22조) 각 위원장은 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써 본원에 보고함. | 제27조제28조 위원회의록 기타 참고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 帶出하지 못한다.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40조 상임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성명과 심사의 결과와 기타 중요사건을 기록하여 위원장의 서명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보존케 함</p> | <p>제26조 (초안 제37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 표결의 수, 결의의 요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함. ② 위원회의록은 위원장이 이에 서명하여 원이 보존함.</p> | <p>제28조제29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제30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자의 성명, 심사의 경과, 결의의 뜻, 표결의 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p> |
| <p>제5장 회의</p> | <p>(초안 제6장 ⇨) 제5장 회의</p> | <p>제4장 회의 (결 제목 신설) 제1절 개의, 산회, 延會, 회의증지와 의사일정</p> |
| | | <p>제30조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삭제, 아래 제51조로 이동.</p> |
| | <p>제35조 (초안 제40조 ⇨ 1946.12.27. 제34조) 의장은 개회(개의), 산회, 延會 及 회의의 증지를 선포함.</p> | <p>제31조 의장은 개의, 산회, 延會와 회의의 증지를 선포한다.</p> |
| <p>제44조 의사를 開하기 전에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1일 전 각 의원에게 통지함 제59조 정부 혹은 의원의 계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함</p> | <p>제36조 (초안 제41조 ⇨ 1946.12.27. 제35조) 의사일정은 의인印本을 첨부하여 2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함.</p> | <p>제32조 ①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 절차와(⇨ "안건과") 개의일사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인의 印本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③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황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動議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위 "10인"을 "20인"으로 수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 ④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p> |
| <p>제45조 의원으로서 자기 신분에 관계된 의안에는 그 표결에 참여치 못함</p> | | <p>(결 제목 신설)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과 심사안은 5인 이상, 기타 안은 3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함.)</p> <p>제58조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코자 할 때는 5인 이상, 기타 의안에는 3인 이상의 연서를 요함</p> | <p>제38조 (초안 제43조 ⇨ 1946.12.27. 제37조) 법률안은 10인 이상의 연서를 요함.</p> | <p>제33조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갖추고 定規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 외에, 개정안에서 위 "10인"을 "20인"으로 수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 ②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付託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除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
| <p>제60조 의원이 動議를 제출코자 할 때는 3인 이상의 찬성이 有하기 전에는 의제를 作함을 不得함</p> | <p>제39조 (초안 제44조 ⇨ 1946.12.27. 제38조) 動議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단, 본원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p> | <p>제34조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動議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p> |
| <p>제53조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함을 不得하고 又 의안이 됨을 得함</p> | <p>제43조 (초안 제48조 ⇨ 1946.12.27. 제42조) ② 수정의 動議를 제기할 때는 5인 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함. 제44조 (초안 제49조 ⇨ 1946.12.27. 제43조)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의안이 될 수 있음.</p> | <p>제35조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 된다. (단서 신설) 단,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동의의 철회는 발의한 자 전부로부터 청구하여야 한다. ⇨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④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p>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신설) 제36조 ①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② 수정안이 전부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제토론을 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④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 | 제59조 (1946.12.30. 신설) 雜案動議는 원제안자의 제기와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同意로 결정함. | (신설) 제37조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 제47조 정부 제의안은 의결을 經하기 전에 수정함을 得하되 원안을 철회함을 不得함 | | |
| 제46조 법률, 재정과 기타 중대안건에 관한 의안은 3독회를 經지 아니하면 의결함을 不得하되, 정부의 청구나 의원 4인 이상 또는 의장의 勸諭로 원의 의결을 經한 者는 3독회를 생략함을 得함 | 제40조 (초안 제45조 ⇨ 1946.12.27. 제39조) ① 법률안은 3독회를 經하지 아니하면 의결하지 못함. ② (1946.12.27. 신설) 전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 출석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③ (1946.12.27. ②에서 이동)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2일을 隔(1946.12.27. '하야' 추가)함. 단, 院意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독회를 생략할 수 있음. | (절 제목 신설) 제3절 독회 제36조 제38조 ①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②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 제48조 ① 제2독회는 제1독회를 經한 후에 1일을 隔하여 행하며, 제3독회는 제2독회를 행한 후에 1일을 隔하여 행함 ② 단, 특별긴급한 사정이 有한 때는 원 의로서 시일을 단축하거나 또는 同日에 행함을 得함 | | |
| 제49조 제1독회는 의안의 표제를 낭독한 후에 제안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설명케 함 | 제41조 (초안 제46조 ⇨ 1946.12.27. 제40조) 제1독회는 의안을 낭독하고 제의자가 그 대제를 설명한 후 법제위원회에 부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대체의 토론을 經하여 제2독회에 附할 여부를 의결함. | 초안 제37조 ①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大體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③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
| 제50조 제1독회는 정부 제의안은 각 該科 위원으로 심사케 한 후에 심사보고를 待하여 대체의 토론을 행한 후에 제2독회에 부할 여부를 의결하되, 심사위원회에 부할 자는 其 보고를 待하여 제2독회 開口否를 의결함 | | 제39조 ①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p>②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상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p> <p>③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상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p> |
| <p>제51조 제2독회는 필히 축조낭독하여야 의결함</p> <p>제54조 ① 의장은 축조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병합하며 혹은 1조를 分析하여 토론케 함을 득함 ② 단, 의원이 이의를 제출하여 찬성하는 자가 有하면 토론에 설치 아니하고 국 의결함</p> | <p>제42조 (초안 제47조 ⇨ 1946.12.27. 제41조) 제2독회에는 축조토론하여야 의결함.</p> <p>제45조 (초안 제50조 ⇨ 1946.12.27. 제44조) 의장은 축조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數條를 연합하여 혹은 一條를 분석하여 토론케 할 수 있음.</p> | <p>제38조제40조 ①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數條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③ 제2독회에서 의원은 의안에 대한 수정의 동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 독회 전에 예비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 후 보고케 한다. ④ 제2독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수정안에서는 위 "20인"을 "30인"으로 수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p> |
| <p>제52조 의원은 의안에 대하여 수정의 動議를 제기하며 혹은 독회 전에도 예비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함을 득함</p> | <p>제43조 (초안 제48조 ⇨ 1946.12.27. 제42조) ① 의원은 의안에 대하여 수정의 動議를 제기하며 혹은 독회 전에 예비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p> | |
| <p>제55조 제3독회는 의안 전체에 가부를 의결함</p> <p>제56조 ①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개정하는 자의 예는 수정의 動議를 제기치 못함 ② 단, 의안 중 사항이 서로 저촉되며 혹은 타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수정을 요할 자는 此限에 不在함</p> | <p>제46조 (초안 제51조 ⇨ 1946.12.27. 제45조) ① 제3독회는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함. ②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개정하는 의예는 수정의 動議를 제기치 못함. 단, 의안 중 사항이 서로 저촉되며 혹은 타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수정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함.</p> | <p>제39조제41조 ① 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②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개정하는 의예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의안 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경리를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의탁(⇨ "부탁")할 수 있다.</p> |
| <p>제57조 건의, 사변, 청원서는 취지를 설명하며 대체를 토의한 후에 원의에 의하여 본 독회의 규정을 준용치 아니하고 표결에 부함을 득함</p> | | <p>(결 제목 신설) 제4절 토론</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61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하는 자는 개회 전에 그 반대 혹은 찬성의 意를 의장에게 통지함</p> | <p>제47조 (초안 제52조 ⇨ 1946.12.27. 제46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하는 자는 개회 전에 그 반대 혹은 찬성의 의견을 (1946.12.27. “意”로 수정) 의장에게 통지함.</p> | <p>제40조제42조 ①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하는 의원은 개회(⇨ “개회”) 前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한다(⇨ “통지할 수 있다”).</p> |
| <p>제62조 의장이 전조의 통고를 받은 때는 통지의 接受次第에 의하여 발언표를 작성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間隔하여 발언케 함</p> | <p>제48조 (초안 제53조 ⇨ 1946.12.27. 제47조) 의장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의 접수순위로 발언표를 작성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間隔하여 발언케 함.</p> | <p>②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반대자와 찬성자를 되도록 교대하여 발언케 한다. ③ 발언을 통지치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 多數의 발언이 끝난 뒤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다. 단, 통지를 한 甲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못하고 乙의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乙의원이 발언을 청할 수 있다.</p> |
| <p>제63조 ① 발언을 통지치 아니한 의원이 발언코자 할 때는 既히 통지한 의원이 多數를 言한 후가 아니면 不得함 ② 단, 甲方 의원의 발언이 미필하고 乙方 의원의 발언이 기필한 시에는 乙方의 의견으로서 발언을 청함을 득함</p> | <p>제49조 (초안 제54조 ⇨ 1946.12.27. 제48조) 발언을 통지치 아니한 의원은 이미 통지한 의원 多數의 발언 후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음. 단, 甲方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못하고 乙方 의원의 발언이 끝났을 때에는 乙方의 의견으로서 발언을 청할 수 있음.</p> | <p>제41조제43조 ① 의원이 발언코자 할 때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② 2인 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한다.</p> |
| <p>제64조 발언을 통지치 아니한 의원은 필히 기립하여 의장을 呼하고 허가를 得한 후에 발언함 제65조 2인 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는 先히 기립한 의원으로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함</p> | <p>제50조 (초안 제55조 ⇨ 1946.12.27. 제49조) ① 의원이 발언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함. ② 2인 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의원을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함.</p> | <p>제42조제44조 의원은 의제 외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처서는 안 된다.</p> |
| | <p>제52조 (초안 제57조 ⇨ 1946.12.27. 제51조) 의원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음. 단, 질의응답은 예외로 함.</p> | <p>제43조제45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응답할 때와 위원장이나 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
| | | <p>제44조제46조 ① 의장은(⇨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추가 : “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되므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회의록(⇨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15조 ①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함. ② 단, 의장이나 의원 3인 이상의 제의 또는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의 결의로 비밀히 진행함.)</p> | <p>제34조 (초안 제39조 ⇨ 1946.12.27. 제33조) 본원의 회의는 공개함. 단, 원의 결의로 비밀히 할 수 있음.</p> | <p>제45조제47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이래, 개정안에서 아래 “10인”을 “20인”으로 수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 ① 국회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회의의 개부를 결의한다.</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75조 비밀회의의 사건은 간행함을不得하고, 비서장으로 하여금 보관케 함</p> | | <p>② 비밀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히 하여야겠다고 결의한 부분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p>제66조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는 의장석에서退하고 부의장으로 임시대리케 함 ② 전항에 의하여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該 안건이 결정되기 전에는 復席함을不得함</p> | <p>제51조 (초안 제56조 ⇨ 1946.12.27. 제50조)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退하여 부의장으로 대리케 함. ② 전항에 의하여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復할 수 없음.</p> | <p>제46조제48조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 ②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p> |
| <p>제67조 토론종결의 신고는 의장이 행함</p> | <p>제53조 (초안 제58조 ⇨ 1946.12.27. 제52조)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함.</p> | <p>제47조제49조 ①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p> |
| <p>제69조 ① 토론종결의 신고는 각 일방에서 2인 이상의 발언이 유효함이 아니면 제기함을不得함 ② 단, 일방에서만 2인 이상의 발언이 유효하 터방에 발언을 청하는 자가 無할 때는 此原에 不在함</p> | | <p>②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종결의 동의가 있고 10인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動議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p> |
| <p>제68조 발언미결의 전이라도 토론종결의 동의가 유효하여 5인 이상의 찬성이 유효한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행함</p> | <p>제54조 (초안 제59조 ⇨ 1946.12.27. 제53조)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종결의 動議가 있어 5인(1946.12.27. "4인"으로 수정)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토론을 經하지(1946.12.27. "하지"로 수정) 아니하고 표결함.</p> | <p>③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제48조제50조 (종전 ①,②의 항 위치를 맞바꿈.) 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② 토론이 끝나면 질의를 할 수 없다. (절 제목 신설) 제5절 표결</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9조 ①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안을 결정함.) (※ 동 약원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안과 국가의 예산·결산을 의결·(중략)·하되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 2의 찬동으로 함.)</p> | <p>(※ 군정법령 제118호 제6조 (정원 수, 의원 발언의 면책 특권) ① 조선과도입법위원의 모든 행동은 정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동 의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전 의원의 4분의 3이(⇨ 1946.12.11. "과반수가"로 개정) 定員數를 구성함.)</p> | <p>(신설, 종전의 위 초안 제30조로부터 이동.) 제51조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p> |
| <p>제70조 現에 출석한 의원이 아니면 표결에 참여함을不得함</p> | <p>제55조 (초안 제60조 ⇨ 1946.12.27. 제54조) 표결할 때에 議場(1946.12.27. "議院"으로 수정)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함.</p> | <p>제49조제52조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p> |

| <p>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71조 표결을 행할 때는 의장이 그 글을 선포하고 선포를 끝낸 후는 該 의안에 대하여 발언함을 不得함</p> | <p>제56조 (초안 제61조 ⇨ 1946.12.27. 제55조) 표결을 행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문제의 요지를 선포하고,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p> | <p>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을 할 때에는 議場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p> |
| <p>제74조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함을 不得함</p> | <p>제58조 (초안 제63조 ⇨ 1946.12.27. 제57조)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음.</p> | <p>제50조제53조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원의 同議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③ 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피타 하는 의원은 白票에, 不可타 하는 의원은 靑票에 각각 성명을 쓰고 투표함에 투입한다.(삭제) ④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피타 하는 의원은 白票을, 不可타 하는 의원은 靑票을 투표함에 투입하고 동시에 크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삭제) ⑤ 만일 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가부의 결과에 異動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크 필요가 없다.(삭제)</p> |
| <p>제72조 ① 표결을 행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其 다소로서 가부를 선포함 ② 의원으로부터 표결에 대하여 疑點이 발생할 때는 재차의 표결을 動議하여 4인 이상의 찬성이 有할 때는 원의에 의하여 의장은 재차로 전항에 의하여 행함</p> | <p>제57조 (초안 제62조 ⇨ 1946.12.27. 제56조) 표결을 행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그 다소로써 가부의 결정을 선포함. 만일 다소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의원의 의의가 있고 이에 5인(1946.12.27. '4인'으로 수정)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무기명투표로서 표결케 함.</p> | <p>초안 제51조 의장은 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삭제. 아래 제60조로 이동.)</p> |
| <p>제73조 법정口의장이 필요로 勸할 시와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有할 때는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투표함을 得함</p> | <p>제6장 예산과 결산 (초안 제7장 ⇨) 제6장 예산과 결산</p> | <p>초안 제52조(삭제. 아래 제61조로 이동.) ①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회기중 위원회에 계속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②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p> |
| <p>제6장 예산과 결산</p> | <p>제6장 예산과 결산</p> | <p>(결 제목 신설) 제6절 예산안 (신설) 제54조 ①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p> |

| 대한민국입시개정령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p>②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
| <p>제76조 예산과 결산 위원은 예산·결산안을 數部에 分析하여 每部の 심사가 끝난 후에 회의를 행함을 득함</p> <p>제77조 예산·결산안 各部의 의사가 끝난 후에는 총역에 就하여 확정결을 행함</p> | <p>제60조 (초안 제64조 ⇨ 1946.12.27. 제58조)</p> <p>① 재정경제위원회는 예산결산안을 數部에 分할하여 每部の 심사가 끝난 후에 회의를 開할 수 있음.</p> <p>② 예산 각항의 議事가 끝난 때에는 총역에 대하여 확정결함.</p> | <p>(신설) 제55조</p> <p>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부분별로 회의를 부의할 수 있다.</p> <p>④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총역에 대하여 확정결을 한다.</p> |
| <p>제78조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再行할 필요가 有함을 認할 時는 해당 사항에 한하여 예산·결산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케 함을 득함</p> <p>제79조 예산·결산 위원의 회의 순서는 본원 상임위원회 規程을 준용함</p> | <p>제61조 (초안 제65조 ⇨ 1946.12.27. 제59조) 예산 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심사를 부탁할 수 있음.</p> | <p>(신설) 제56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p> <p>(신설) 제57조 예산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에 제심사를 부탁할 수 있다.</p> |
| | | <p>(절 제목 신설) 제7절 회의특과 속기록</p> |
| | <p>초안 제42조 기록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其 印本을 배부하여야 該 위원의 수정을 요함.</p> <p>⇨ (1946.12.27. 제36조) ⇨ 1946.12.30. 제37조</p> <p>속기록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其 印本을 배부하여야 各 위원의 수정을 요하며 그 수정기한은 其 次회의 기일까지로 정함.</p> | <p>제53조제58조</p> <p>① 국회의 회의특을 작성하고 左의 사항을 기재한다.</p> <p>1. 국회성립, 2. 개의, 3. 명 4. 회의 부 5. 회의의 의안제목 6. 의제가 된 그 월,일,시 7. 결의사항 8. 표결과 가 9.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결의 수 10.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결의 수</p> <p>3. 출석 국무 4. 의장과 위 5. 위원, 정부위원 6. 의장과 위 7.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결의 수 8. 표결과 가 9.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결의 수 10.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결의 수</p> <p>② 회의특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p> |

| <p>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 | <p>제54조제59조</p> <p>①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 일정, 의안, 투표자 성명(⇒ ‘의원의 발인’)과 재한의 보고 기타 중요환(삭제) 사항을 게재한다.</p> <p>② 의원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코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p> <p>③ 연설한 의원은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정정을 청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p> |
| | | <p>(결 제목 신설) 제8절 의결처리</p> <p>(신설) 제60조 의장은 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위 초안 제51조로부터 이동.)</p> |
| <p>(※ 1940.10.9. 대한민국입시약원 제9조 ② 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함.)</p> | | <p>(신설) 제61조 (위 초안 제52조로부터 이동.)</p> <p>①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회기중 위원회에 계속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p> <p>②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p> |
| <p>제9장 국무원 및 정부위원</p> | <p>(초안 제8장 議院과 행정기관 및 인민과의 관계 ⇒ 제7장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의 관계 (※ 해당 장에 대하여는 아래도 참조)</p> | <p>제5장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p> |
| <p>(※ 1940.10.9. 대한민국입시약원 제20조 ①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음.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p> <p>② 단, 질문한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p> <p>제97조 국무원 및 정부위원은 입시헌법 제41조에 의하여 수시로 출석발언함을 득할지나 의원의 발언을 중시함을不得함</p> <p>제98조 국무원 및 정부위원은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p> <p>제99조 본 원의 및 위원회는 국무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설명을 요구함을 득함</p> <p>제100조 국무원 및 정부위원은 각 회의에서 均히 표결함을不得함</p> | <p>1946.12.30. 제63조 (초안 제67조 ⇒ 1946.12.27. 제61조) 본원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행정수반 또는 각 행정장의 출석답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p> <p>⇒ (1947.2.17. 수정) 제63조 본원 또는 각 위원회는 행정수반을 통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책임관리의 출석답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p> | <p>제55조제62조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승낙을 얻고 정부위원을(⇒ ‘행정각부 차관과 차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56조제63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전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된다(⇒ ‘한다’).</p> <p>제57조제64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p>제 7 장 질문 · 답 · 건 의 及 査 辨</p> <p>제80조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요지 할 때는 3인 이상의 연서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정부에 轉送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答覆을 요구함</p> <p>제81조 정부의 答覆이 요령이 不得함으로 認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국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함</p> <p>제82조</p> <p>① 전조에 의하여 국무원이 통지를 受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 有한 때는 대리로서 출석답변케 함을 得함</p> <p>② 전항에 의한 대리자의 答辨이 요령이 不得하므로 認할 때는 재차 출석을 요구하되, 국무위원이 재차 대리로 출석케 함을 不得함</p> <p>제83조 정치상 긴급문제에 대하여 의원이 臨時動議로서 의결을 經한 때는 국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함</p> <p>제84조 임시대통령을 탄핵할 의안은 총의원 5분지 1 이상의 연서와, 국무원을 탄핵할 의안은 총의원 10분지 1 이상의 연서가 아니면 제출함을 不得함</p> <p>제85조 탄핵안의 표결은 무기명식 투표로 행함</p> <p>제86조 임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는 5일 이내에 此를 심판함</p> | <p>제65조 (초안 제69조 ⇨ 1946.12.27. 제63조)</p> <p>① 건의안은 의원 5인 이상의 연서가 아니면 裁의할 수 없음.</p> <p>② 건의안은 가결 후 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송달함.</p> | <p>제58조 제65조</p> <p>①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10인(⇨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② 질문은 簡명한(삭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p> <p>제59조 제66조</p> <p>①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p> <p>②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答辨하여야 한다.</p> <p>③ 그 기간 내에 答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p> <p>제60조 제67조 질문에 대한 정부의 答辨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付할 수 있다.</p> |
| <p>제87조 건의안은 3인 이상의 연서가 아니면 제출함을 不得함</p> <p>제88조 건의안은 가결 후에 즉일로 정부에 咨達함</p> <p>제89조 既히 咨達한 건의를 정부가 裁용치 못할 때는 동 회기 내에 재차 제출함을 不得함</p> <p>제90조 査辦案은 의원 3인 이상의 연서가 아니면 제출치 못함</p> <p>제91조 査辦案은 가결 후에 즉일로 정부에 咨達함</p> | |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제8장 청원 | (초안 제9장 ⇨) 제8장 청원 | 제6장 청원 |
| 제92조 인민의 청원서는 의원 5인 이상의 소개가 無하면 제출함을不得함 | 제69조 (초안 제73조 ⇨ 1946.12.27. 제67조) ① 청원은 서면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자가 서명날인하여 소개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여야 함. ② 법인의 청원서에는 그 대표자가 此에 서명하고 법인의 날인을 요함. | 제61조제68조 ① 국회가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3인 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을(⇨ “연령과 청원요지들”) 기재하고 청원자가 자서날인(⇨ “청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93조 청원서는 필히 청원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케 하며 청원위원이 法式에 의치 아니함으로 罷할 때는 의장이 소개인에게 교부하여 반환케 함 제94조 청원사건은 위원회의 가결로써 원의에 부하며 의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는 직점으로 원의에 부함을 득함 | 제70조 (초안 제74조 ⇨ 1946.12.27. 제68조) 청원은 청원징계위원회에 附하여 심사케 함. | 제62조제69조 ①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 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 | 제71조 (초안 제75조 ⇨ 1946.12.27. 제69조) ① 청원징계위원회에서 원의에 附할 의결을 한 청원 중 법령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령안을 具하여 보고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때에는 청원징계위원장으로써(1946.12.27. “을”로 수정) 제출자로 함. | |
| | 제72조 (초안 제76조 ⇨ 1946.12.27. 제70조) 청원징계위원회에서 원의에 附치 않은 결의의 보고에 대하여는 5일까지의 의원 중으로부터 원의에 附코져 하는 요구가 없으면 청원징계위원회의 결의로써 확정함. | 제63조제70조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서는(⇨ “청원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전항 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95조 청원사건은 가결 후에 정부에 咨達하여 其 되답을 요구함 | 제73조 (초안 제77조 ⇨ 1946.12.27. 제71조) 左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치 못함. 1. 법률상 법인으로 認하는 자 외에 대표 명의로 제출한 者 2.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것 3. 재판에 간여하는 것 4. 본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文語를 用한 것 | 제64조제71조 左의 각항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제13장 본원과 인민 및 관청의 관계 | (초안 제8장 議院과 행정기관 및 인민과의 관계 ⇨) 제7장 議院과 행정기관과 인민과의 관계 | 제7장 국회의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
| | <p>초안 제 ⇨ 1946.12.27. ⇨ (1947.2.17. 66조 제60조 (⇨ 수정) 제62조 ① 본원 1946.12.30. 제 본원은 관리 은 행정수 62조) 임명에 대하 반을 선거 ① 본원은 행 여 동의하되 하며 각 행 정수반을 선거 출석의원 3분 정장을 同 하며 각 행정장 의 2 이상의 意함. 의 임명에 대하 (1947.11.24. ② 선거 의 방법은 행 “재적의원 3 본원 의장 ② 선거의 방 분지 2 이상의 선거 방법 법은 의장 선거 출석과 출석 과 동일하 方法을 준용하 의원 과반수 고 동의는 되 제적의원 3 의”로 수정 출석의원 의 과반수 합(“준 찬동으로 함. 決함. 용하되”에 이어 (※ 이후 군 ③ 행정수반 또는 행정장이 정법령 영문 위법할 때에는 관보에는 “In 불신임 또는 탄 approving 핵안을 제출함. appointment s, two thirds of members present shall be required.” 로 게재됨.)</p> | |
| | <p>(※ 군정법령 제118호 제5조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직무 및 권한) ② 동 議院은 또한 과거의 군정청에 임명한 인사 행정 신분 4등급 이상의 모든 관직 임명을 제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또 그러한 미래의 모든 임명을 추진하 고 그에 동의하는 권한이 있음.)</p> <p>제67조 (초안 제71조 ⇨ 1946.12.27. 제65조) ① 3등급 이상의 관리는 전부 자직심사위원회에 附 하여 심사케 함. ② 심사의 표준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1946.12.27. “, 전범” 추가), 奸商 정치조례 (1946.12.27. “에 대한 법률조례”로 수정) 및 규규 등 (別定, 1946.12.27. 팔호부분 삭제)에 의함.</p> | |
| 제120조 본원은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 야 정부에 향하여 보고 혹은 조사문서를 청구할 시에 정부는 거절함을 不得함 | 제64조 (초안 제68조 ⇨ 1946.12.27. 제62조) ① 본원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 하여 보고 혹은 조사문서를 청구할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은 전항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함. | 제65조제72조 국회의 의안 기타 국 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 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 | <p>채66조채73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채67조채74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두를(⇒ ‘출석율’)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p> |
| <p>제119조 ① 본원은 임시대통령 및 국무원을 제외한 외에는 기타 행정 및 사법관서의 직접으로 문서의 왕복을 행함을不得함 ② 단, 특별규정이 유할 때는 其 규정에 의함을 得함</p> | <p>제66조 (초안 제70조 ⇨ 1946.12.27. 제64조) 본원은 행정수반 이외에는 직접 문서의 왕복을 행할 수 없음. (* 이후 군정법령 영문관보에는 게재되지 않음.)</p> | |
| | | <p>채68조채75조 ①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국회에 송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p> |
| <p>제118조 본원은 인민에 대하여 발표, 봉고를不得하며,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인민을 소환함을不得함</p> | <p>제68조 (초안 제72조 ⇨ 1946.12.27. 제66조) 본원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포고 고시를 발하거나 또는 소환심문(1946.12.27. ‘소환訊問’으로 수정)을 행할 수 없음.</p> | |
| | <p>(초안 제10장 ⇨) 제9장 청가, 사직</p> | <p>제8장 청가, 사직, 퇴직, 보궐과 자격심사</p> |
| | | <p>(청가, 사직에 관한 부분)</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6조 임시의정원의 의장은…(중략)…5일 이내의 의원의 휴가…(중략)…를 허가함.)</p> <p>제11조 의원의 受由기간이 3일 이내일 때는 의장이 專行하고 3일 이상일 때는 院議로서 결정함</p> | <p>제74조 (초안 제78조 ⇨ 1946.12.27. 제72조)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를 具하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전항의 허가는 5일까지는 의장이, 10일까지는 원의로 附함(1946.12.27. ‘원의로써 함’으로 수정). (1946.12.27. 신설) ③ 단, 연속 3차 이상은 청가하지 못함.</p> | <p>채69조채76조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결의로 한다.</p> |
| | <p>제75조 (초안 제79조 ⇨ 1946.12.27. 제73조) 청가기일 내에 출석한 때에는 청가허가는 출석일부터 무효로 함.</p> |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8조 …(前略)…의원사직의 청거 여부는 院議로 정함.)</p> | <p>제76조 (초안 제80조 ⇨ 1946.12.27. 제74조)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具하여 사표를 원에 제출함. ② 전항의 사표는 토문을 撰치 않고 그 허가여부를 의결함.</p> | <p>채70조채77조 ①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갖추고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12조 의원의 사직 離任 여부는 院議로서 정함</p> | | <p>㉓ 전항의 사직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한다. 만일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p> |
| <p>제13조 의원이 결원될 때는 의장으로불러 국무원에 통지하여 보선케 함</p> | <p>(※ 군정법령 제118호 제9조 (임기) ② 전기 선거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사망, 사직, 자격상실, 유는 계명으로 인하여 의석에 결원이 생할 시는 그 보결은 의원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전임 의원의 피선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함. (1947.3.6. 신설) 제6조 (초안 제5조) ㉓ 의원의 보선(1946.12.27. "보결"로 수정)은 선거법(1946.12.27. "새 선거법"으로 수정)이 제정되기까지는 의장의 통지로 전례에 의하여 행함.</p> | <p>(퇴직, 보결에 관한 부분) 제72조제78조 ①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72조제79조 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 "통지하여 보결신청서를 청구")하여야 한다.</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며 의원자격과 선거의 疑議에 대하여 최고판결권을 가짐.)</p> | <p>(초안 제4장 의원자격심사) ⇒ (1946.12.27. 장 제목 삭제)</p> | <p>(자격심사에 관한 부분)</p> |
| <p>제5조 의원의 자격심사는 의장이 3인 이상의 의원을 지명하여 심사케 함</p> | <p>제7조 (초안 제12조) 의원의 자격은 개회초에 자격심사위원회에 附하여 심사보고케 함.</p> | |
| <p>제6조 의원이 타 의원의 자격을 침해하다 인할 때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심사서를 제출함을 득함</p> <p>제7조 의장은 前 심사서를 받았 때는 ㄱㄱ조에 의하여 처리함</p> | <p>제8조 (초안 제13조) ①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請書를 제출할 수 있음. ② 의장은 청심서를 자격심사위원회(1946.12.27. "자격심사" 로 수정)에 附하여 심사보고케 함.</p> | <p>제73조제80조 ①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청심서와 그 부분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전항의 청심서를 자격심사위원회(⇒ "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③ 피심의원이 천재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바를 증명하는 때에는 의장은 제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
| | | <p>제74조제81조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 "정계자격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한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 "정계자격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제75조제82조 자격심사위원회(⇒ "정계자격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 | <p>채76조제83조 자격심사위원회(→ ‘경제자격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채77조제84조 피심의원은 본회의 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 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케 할 수 있다.</p> |
| 제9조 의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는 못 해직됨 | | |
| 제10조 의원의 그 자격에 疑意가 有할 시라도 원의 결정을 罷하기 전에는 통상 과 如히 출석함을 得함 | 제9조 (초안 제14조) 의원은 청심서가 결정되기까 지는 그 의원은 議院에서의 발언권 及 表결권을 잃지 아니함. 단, 자기에 관한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 채78조제85조 의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 원으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 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 에서 변명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 제11장 경위와 기술 | (초안 제12장 ⇨) 제11장 警衛, 질서 及 방정 | 제9장 질서와 경호 |
| 제106조 경위권은 의장이 專行함 | 제81조 (초안 제85조 ⇨ 1946.12.27. 제79조) 의장 은 개회중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위권을 행사함. | 채79조제86조 의장은 회기중 국회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한 국회 내 경호권을 행한다. |
| 제107조 본원에 경위 3인을 의장이 專 任하야 衆院의 경위를 장리케 함 | 제82조 (초안 제86조 ⇨ 1946.12.27. 제80조) 경위장과 경위는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원내의 경 위를 행함. | 채80조제87조 ① 국회는 그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한다. ②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議場 내에서, 경 찰관은 議場 외에서 경호한다. |
| 제108조 의원이 회의시에 원법을 위배 하거나 議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가 有하면 의장은 제지하며 혹은 그 언 론을 撤消하되 仍히 不聽하는 자는 其 발 언을 中止하거나 퇴출을 명함을 得함 | 제83조 (초안 제87조 ⇨ 1946.12.27. 제81조) 의원이 회의중에 원법에 위반하거나 議場의 질서 를 문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언론을 제지취소시키 며 또는 그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 | 채81조제88조 의원이 회의중에 본 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議場의 질서 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 을 훼손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 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 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 킬 수 있다. |
| | | 채82조제89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 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p>제109조 議場이 소요하여 질서를 유지 치 못하는 때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 나 혹은 산회를 선포함을 득함</p> | <p>제84조 (초안 제88조 ⇨ 1946.12.27. 제82조) ① 議場이 소요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 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음. ② 기타 원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일체의 조치는 의 장이 처결함.</p> | <p>제83조 제90조 議長은 議場이 소란 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 할 수 있다.</p> |
| <p>제110조 방청인이 회의를 방해하는 자 有할 때는 의장은 퇴석을 명하거나 혹은 警吏에게 送交하며 若 방청석이 소요하 야 제지키 불가능할 때는 의장이 방청인 전 부를 퇴출케 함을 득함</p> | | <p>제84조 제91조 국회 원내에서(⇨ "내에") 현행법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 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議場 내에 있어서는 의장 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원 제16 조 임시의정원 의장은...(중략)...방청차 를 허가함.)</p> | <p>제86조 (초안 제90조 ⇨ 1946.12.27. 제84조) ①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야 此를 행함 (1946.12.27. "許贊"으로 수정). ② 방청권은 외국관청(1946.12.27. "외국관원, 관 청"으로 수정), 신문사 등에는 원에서 배부하고 일반 에게는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其 의원에게 배부함.</p> | <p>제85조 제92조 ① 의장은 議場 내의 질서를 방해하 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 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p> |
| | <p>제85조 (초안 제89조 ⇨ 1946.12.27. 제83조) 원내에는 무기,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 착란자, 행동수상한 자는 누구든지 장내에 들어오지 못함.</p> | <p>제86조 제93조 ①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 한다. ②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 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방청 권은 외국관원, 관청, 신문사 등에는 국회에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의 원의 소개에 의하여 배부한다. ③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장(⇨ "방청증") 을 교부한다.</p> |
| | <p>제85조 (초안 제89조 ⇨ 1946.12.27. 제83조) 원내에는 무기,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 착란자, 행동수상한 자는 누구든지 장내에 들어오지 못함.</p> | <p>제87조 제94조 ①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 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p> |
| | <p>제87조 (초안 제91조 ⇨ 1946.12.27. 제85조) 방청인은 원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과 의장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p> | <p>제88조 제95조 방청인은 좌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議場 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2. 음식이나 흡연할 수 없다. 3. 의원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할 수 없다. 4. 소란히 하고 의사를 방해할 수 없다.</p> |

| 대한민국입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제12장 징계 | (초안 제13장 ⇨) 제12장 징계 | 제10장 징계 |
| 제111조 본원은 의원의 징계권을 유함 | 제88조 (초안 제92조 ⇨ 1946.12.27. 제86조) 본원은 의원에 대하여 징계권이 있음. | |
| 제112조 징계는 先에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經하여 원의에 의하여 결정된 후에 의장이 선포함 | 제90조 (초안 제94조 ⇨ 1946.12.27. 제88조)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청원징계위원회에 附하여 심사한 후 원의 결의로써 선포함. | 제89조 제96조 ①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에 붙여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
| 제116조 징계의 動議는 사건발생 후 5일 이내에 제기함 | 제94조 (초안 제98조 ⇨ 1946.12.27. 제92조) ① 징계의 動議는 사건발생 후 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됨. | ②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
| 제117조 ① 징계의 동의는 의원 3인 이상의 제의가 아니면 제기함을 不得함 ② 단 제114조, 제115조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의함을 득함 | ② 징계의 動議는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제의로 함. | ③ 의원은 18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를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次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 속기록에 기재된 위 “十八人”은 이후 논의 및 최종 개정된 국회법에 비추어 보면 “十人”의 오기로 보인다.) |
| | | 제90조 제97조 ①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또는 사범자를 퇴장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
| | 제89조 (초안 제93조 ⇨ 1946.12.27. 제87조) 의원이 원법에 위반하거나 의장의 제지를 2차 이상 불복할 때에는 징계사범으로 함. | 제91조 제98조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써 징계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 제 2 장 의 원 (※ 1940.10.9. 대한민국입시약헌 제19조 의원은 회기중 원의 허가 없이는 그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 2 장 의 원 (※ 군정법령 제118호 제6조 (정원 수, 의원 발언의 면책 특권) ② 동 의회석상이나 또는 건설될 수 있는 위원회석상이나를 막론하고 동 의원에서의 토론은 자유이며 의원은 아모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토론 진행 중의 발언에 관하여 질문을 받지 않음. ③然이나 동 議院은 행위규정을 채용하며 의원의 무질서한 행위를 처벌할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 제4조 (초안 제3조) 의원은 원내(본원의 회의석상이나 각종 위원회의 회의석상)의 언론 및 표결은 자유이며 | |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 | 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 |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 헌 제18조 의원이 이유없이 개회 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속 2주일간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 해입되 며...(하략)</p> <p>제8조 의원이 無故히 개회 후 7 개일까지 到院치 않아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함. 단, 부득이한 사고 의 보고가 유할 때는 此限에 不在 함</p> | <p>(1946.12.27. “원의에서는” 추가) 아무 곳에 서도 그 인원과 표결에 대하여 질문을 받지 (1946.12.27. “아니하며 책임을 지지” 추가) 아니함. 단, 의원이 그 인원을 연설, 인쇄, 필 기 기타(1946.12.27. “그 밖에 다른”으로 수 정) 방법으로 공포할 때에는 일반법들에 의하 야 처분됨(1946.12.27. “처벌됨”으로 수정).</p> <p>제5조 (초안 제4조) 의원은 내란, 외란의 범 죄나 혹은 현행범이 아니면 개원중에 원의 허 락이 없이 체포할 수 없음.</p> <p>(※ 군정법령 제118호 제6조 (정원 수, 의원 발언의 면책 특권, 1947.3.6. 신설)</p> <p>④ 의원은 내란외란의 범죄나 혹은 현행범 이 아니면 개원 중 동 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 되지 않음.)</p> <p>제6조 (초안 제5조)</p> <p>① 의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개회일까지 (1946.12.27. “개회일 후 7일까지”로 수정) 등 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④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개회 일부 10일이 경과하도록(1946.12.27. “15 일이 지나도록”으로 수정) 출석치 아니할 때 에는 그 자격상실 여부를 院意로 결정함.</p> <p>(※ 군정법령 제118호 제9조 (임기)</p> <p>④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 지 않아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함. 단, 의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함.(1947.3.6. 신설)</p> <p>⑤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치 않으며, 법률에 위반하며 또는 중대한 정 계사범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은 원의로써 그 의원의 자격상실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 음.(1947.3.6. 신설))</p> | <p>제92조 제99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 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 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 는 의장은 이것을 정계위원회(⇒ “정 계자격위원회”)에 붙인다.</p> |
| <p>제114조 의원이 無故결석이 3일에 포함한 자는 2일 이내의 발언을 정지하고, 발언 의 정지가 2회에 포함한 자는 2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하고, 출석의 정지가 2회에 포함 자는 제명함</p> | <p>제92조 (초안 제96조 ⇨ 1946.12.27. 제90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의장이 발한 招狀을(1946.12.30. “權促통지서”로 수정) 받은 후 이유없이 10일까지 역시 출석치 않을 때에는 원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음.</p> | |
| <p>제115조 의원이 용기를 휴대하고 의장 에 출석하는 자는 제명함</p> | | |
| | <p>제93조 (초안 제97조 ⇨ 1946.12.27. 제91조) 정계 사범의 職務는 비밀회의로 함.</p> | <p>제93조 제100조 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p> |
| | <p>제95조 (초안 제99조 ⇨ 1946.12.27. 제93조) ① 의원은 자기에 관한 정계사범회의에 출석하지 못함. 단,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p> | <p>제94조 제101조 의원은 자기의 정계 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고 스스로 변명하며</p> |

| <p>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942.10. 개정)</p> | <p>남조선과도입법의원 院法 (초안 1946.12.23. 제출, 12.27., 12.30., 1947.2.17., 11.24. 각 수정)</p> | <p>국회법 (초안 1948.6.7. 제출, 6.10. 가결 / 개정안 9.10. 제출, 최종개정 10.2.)</p> |
|--|--|---|
| | <p>변명하고 또는 타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케 할 수 있음. (1946.12.30. 신설) ② 의원의 계명결의는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同意로 함.</p> | <p>또는 다른 의원으로 대신 변명케 할 수 있다.</p> |
| <p>(※ 1940.10.9. 대한민국임시약헌 제21조 의원의 징계는 발언이나 출석의 정지와 계명으로 하되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 함.)</p> <p>제113조 징계방법은 下와 如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발언을 정지 2.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출석을 정지 3. 公開議場에서 사죄 4. 계명. 단, 계명의 결의는 제114조 및 제115조의 경우를 제한 外에는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정함 | <p>제91조 (초안 제95조 ⇨ 1946.12.27. 제89조) 징계의 방법은 次와 如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公開한 議場(1946.12.27. “의회장”으로 수정)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발언을 정지하는 것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석을 정지하는 것 4. 계명 | <p>제95조제102조 징계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제96조제103조 징계의 방법은 次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회의장(⇨ “공개회의”)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 이내의 발언을 정지케 하는 것 3.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4. 계명 |
| | | <p>제97조제104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장(⇨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p> |
| <p>제14장 보칙</p> <p>(※ 본래 조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출처에는 “제14장 보칙(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다.)</p> | <p>(초안 제14장 ⇨) 제13장 보칙</p> <p>초안 제100조 본조를 개정할 때에는 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同意가 있어야 함.</p> <p>초안 제10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p> <p>(1946.12.27. 제94조) ⇨ 1946.12.30. 제96조 본조를 개정할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장, 의원 10인 이상의 재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同意가 있어야 함.</p> <p>(1946.12.27. 제95조) ⇨ 1946.12.30. 제97조 본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함.</p> | <p>부 칙</p> <p>(초안) 본법은 국회에서 통과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제10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107조 본법을 제정할 국회의 최초의 회기는 국회의 결의로써 정한다.</p> |

[부록 2]

1947년 일본 국회법 · 중의원규칙과 한국 국회법 초안의 동일 · 유사조항 比較表

* 일본 국회법 · 중의원규칙의 조문 · 조항 번호는 번역하지 않음.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1947, 이하 같음) 第一条 議員は、召集詔書に指定された期日の午前十時に、衆議院に集合しなければならない。(議員은 소집조서에 지정된 기일의 오전 10시에 중의원에 집회하여야 한다.)</p> <p>衆議院規則 第十四条 ① 議員の議席は、毎会期の始めに議長がこれを定める。(단서생략. 의원의 의석은 매 회기초에 의장이 이를 정한다.)</p> | <p>제1조 ④ 의원은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p> <p>⑤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초에 의장이 정한다.</p> |
| <p>国会法 (1947, 이하 같음) 第十五条 ② 各議院は、七日以内においてその院の休会を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은 7일 이내로 그 院의 휴회를 의결할 수 있다.) ③ 各議院は、議長において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たとき、又は総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議員から要求があつたときは、国会の休会中又はその院の休会中에서도會議を開く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은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총 議員의 4분의 1 이상의 議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국회의 휴회중 또는 그 院의 휴회중이라 하더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p> | <p>제3조 국회는 그 결의로 2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p> |
| <p>国会法 第十八条 各議院の議長及び副議長の任期は、各々議員としての任期による。(각 議院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議員으로서의 임기에 의한다.)</p> | <p>제5조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그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p> |
| <p>衆議院規則 第四条 ① 議員は、点呼に応じて、投票及び木札の名刺を持参して、演壇に至り投票する。(의원은 호명에 응하여 투표지와 명패를 지참하고, 연단에서 투표한다.) ② 甲參事は名刺を、乙參事は投票を受け取り、議員に代つてそれぞれ名刺箱及び投票箱に投入する。(甲 參事는 명패를, 乙 參事는 투표지를 받아 투표의원을 대신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p> <p>衆議院規則 第六条 ① 投票が終つたときは、事務総長は、參事をして直ちに名刺及び投票を計算し、投票を点検させる。(투표가 끝났을 때 사무총장은 참사로 하여금 즉시 명패 및 투표 수를 계산하고 투표 수를 점검시킨다.) ② 投票の数が名刺の數に超過したときは、更に投票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選挙の結果に異動を及ぼさ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투표 수가 명패 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재차 투표를 하여야 한다. 단, 선거결과에 異動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 <p>제6조 ③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자기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p> <p>④ 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異動이 미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第七條 投票の点檢が終つたときは、事務総長は、選挙の結果を報告する。(투표의 점검이 끝났을 때에 사무총장은 선거결과를 보고한다)</p> <p>衆議院規則 第八條 ① 投票の過半数を得たものを当選人とする。(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p> <p>② 投票の過半数を得た者がないときは、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二人について決選投票を行い、多数を得た者を当選人とする。但し、決選投票を行うべき二人及び当選人を定めるに当り得票数が同じときは、くじでこれを定める。(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수를 얻은 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그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결선투표를 행할 2인 중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데 있어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결정한다)</p> <p>衆議院規則 第九條 ① 議長の選挙が終つたときは、議院は、副議長の選挙を行う。(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議院은 부의장 선거를 행한다)</p> <p>② 副議長の選挙については、議長の選挙の例による。(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p> | <p>⑤ 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p> <p>⑥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p> <p>⑦ 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p> |
| <p>国会法 第十九條 各議院の議長は、その議院の秩序を保持し、議事を整理し、議院の事務を監督し、議院を代表する。(각 議院의 의장은 議院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議院의 사무를 감독하며 議院을 대표한다)</p> <p>国会法 第二十条 議長は、委員会に出席し発言することができる。(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二十一条 各議院において、議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議長が欠けたときは、副議長が、議長の職務を行う。(각 議院에서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결원인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p> <p>国会法 第二十二条 ① 各議院において、議長及び副議長に共に事故があるときは、仮議長を選挙し議長の職務を行わせる。(각 議院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의장(仮議長)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p> <p>② 議院は、仮議長の選任を議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議院은 仮議長の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p>제7조</p> <p>①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p> <p>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p> <p>②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p> <p>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p> <p>⑤ 국회는 임시의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三十五条 議員は、一般官吏の最高の給料額より少くない歳費を受ける。(議員은 일반관리의 최고 급여액보다 적지 않은 세비를 받는다)</p> <p>国会法 第三十六条 議員は、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退職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議員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p> | <p>제8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三十七条 議員は、別に定める規則に従い、会期中及び公務のため自由に国有鉄道に乗車することができる。(議員은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회기중 및 공무를 위하여 자유로이 국유철도에 승차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三十九条 ① 議員は、その任期中別に法律で定めた場合を除いては、官吏又は地方公共団体の吏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議員은 임기중에 따로 법률로써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吏員이 될 수 없다.)</p> <p>② 議員は、その任期中内閣行政各部における各種の委員、顧問、嘱託その他これに準ずる職務に就くことができない。但し、法律で定めた場合又は国会の議決に基づく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의원은 임기중 내각 행정각부의 각종 위원, 고문, 촉탁 기타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법률이 정한 경우 또는 국회의 의결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 <p>제9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철도에 승차할 수 있다.</p> <p>제10조 의원은 그 임기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除하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p> |
| <p>国会法 第二十六条 各議院に、事務総長一人、参事その他必要な職員を置く。(각 議院은 사무총장 1인,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国会法 第二十七条 ① 事務総長は、各議院において国会議員以外の者からこれを選挙する。(사무총장은 각 議院에서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부터 이를 선거한다.)</p> <p>② 参事その他の職員は、事務総長が、議長の同意を得てこれを任免する。(참사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이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임면한다.)</p> <p>国会法 第二十八条 ① 事務総長は、議長の監督の下に、議院の事務を統理し、公文に署名する。(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 하에 議院의 사무를 통리하고, 공문에 서명한다.)</p> <p>② 参事は、事務総長の命を受け事務を掌理する。(참사는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한다.)</p> <p>国会法 第二十九条 事務総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事務総長が欠けたときは、その予め指定する参事が、事務総長の職務を行う。(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사무총장이 결원인 때에는, 그가 미리 지정한 참사가 사무총장의 직무를 행한다.)</p> | <p>제11조 ① 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②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되 국회에 인준을 요한다.</p> <p>③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p> <p>제12조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국회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p> <p>③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p> |
| <p>国会法 第三十二条 ① 兩議院の経費は、独立して、国の予算にこれを計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양 議院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前項の経費中には、予備金を設けることを要する。(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하여야 한다.)</p> | <p>제13조 ①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p> |
| <p>国会法 第四十条 各議院の委員は、常任委員及び特別委員とする。(각 議院의 위원은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으로 한다.)</p> | <p>제14조 ① 국회에左의 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임위원 2. 특별위원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四十一条 ① 常任委員は、会期の始めに議院において選任し、議員の任期中その任にあるものとする。(상임위원은 회기 초에 議院에서 선임하여 議員 임기중 그 임무를 맡는다.)</p> <p>② 議員は、少くとも一箇の常任委員となる。但し、同時に三箇を超える常任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議員은 적어도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동시에 3개를 넘는 상임위원이 될 수는 없다.)</p> | <p>② 상임위원은 의원의 임기초에 국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중 제임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필요에 의하여 2개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四十八条 委員長は、委員会の議事を整理し、秩序を保持する。(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p> | <p>제17조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p> |
| <p>国会法 第四十七条</p> <p>② 常任委員会及び特別委員会は、各議院の議決で特に付託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閉会中もなお、これを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 議院의 의결로써 특히 부탁한 사건에 대하여 폐회중에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四十五条 ① 特別委員は、常任委員会の所管に属しない特定の事件を審査するため、議院において選任し、その委員会に付託された事件が、その院で議決されるまでその任にあるものとする。(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특정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議院에서 선출되며 위원회에 부탁된 사건이 그 院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임무를 맡는다.)</p> <p>衆議院規則 第三十八条 ① 委員会に一人又は数人の理事を置き、その委員がこれを互選する。(위원회는 1인 또는 수인의理事를 두고 그 위원으로써 이를 호선한다.)</p> <p>② 委員長に事故があるときは、理事が委員長の職務を行う。(위원장이 사고인 때에는 理事가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p> | <p>제18조</p> <p>② 상임위원회는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외에 그 부문에 속한 입법자료의 수집조사와 입안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계속될 수 있다.</p> <p>③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특별히 부탁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④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약간의 간사를 둔다.</p> <p>⑤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p> |
| <p>国会法 第四十三条 ① 各常任委員会には、少くとも二人の国会議員でない専門の知識を有する職員(これを専門調査員という)及び書記を常置する。但し、議院において不必要と認めた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각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2인의 국회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를 전문조사원이라 한다)와 서기를 항상 두어야 한다. 단, 議院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 <p>제20조</p> <p>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錄事를 둔다.</p> |
| <p>国会法 第五十一条 ① 委員会は、一般的關心及び目的を有する重要な案件について、公聴会を開き、真に利害關係を有する者又は学識経験者等から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위원회는 일반적인 관심과 목적을 가진 중요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고 진정한 이해관계자 가진 자나 학식경험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総予算及び重要な歳入法案については、前項の公聴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총예산 및 중요한 세입법안에 대하여는 전항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p> | <p>제22조</p> <p>①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안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五十二条 ① 委員会は、議員の外、委員長の許可を得た者が、これを傍聴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その委員会の決議により秘密会とすることができる。(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p> <p>② 委員長は、秩序保持のため、傍聴人の退場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 <p>제23조</p> <p>①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
| <p>衆議院規則 第五十七条 委員会は、議員から委員會議録その他の参考資料の閲覧を求められたときは、審査又は調査に支障のない限りこれ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위원회가 議員으로부터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받은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衆議院規則 第五十八条 前條の委員會議録はその他の参考資料の類は、何人も、これを議院の外に持ち出すことができない。(전조의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자료는 누구라도 이를 議院 바깥으로 반출할 수 없다.)</p> | <p>제27조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 帶出하지 못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九十条 議事日程には、開議の日時及び會議に付する事件並びにその順序を記載する。(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의할 사건 및 그 순서를 기재한다.)</p> <p>衆議院規則 第一百十二条 議長が必要と認めたとき又は議員の動議があつたときは、議長は、討論を用いなくて議院に諮り、議事日程の順序を変更し又は他の事件を議事日程に追加することができる。(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議員의 動議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토론없이 議院에 물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p> <p>衆議院規則 第一百十三条 議事日程に記載した事件の議事を開くに至らなかったとき又はその議事を終らなかつたときは、議長は、更にその日程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의사일정에 기재된 사건의 의사를 개의하기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의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p> | <p>제32조 ①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 절차와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印本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p> <p>②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p> <p>③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動議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二十八条 ① 議員が法律案その他の議案を發議するとき、その案を具え理由を附し、成規の賛成者と連署して、これ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단서 생략. 議員이 법률안 기타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안을 具하여 이유를 첨부하고 定規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議長は、前項の議案を印刷して各議員に配付する。(의장은 전항의 의안을 인쇄하여 각 議員에게 배부한다.)</p> <p>国会法 第五十六条 ① すべて議員は、議案を發議することができる。(모든 의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p> | <p>제33조</p> <p>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具하고 定規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② 議案が發議又は提出されたときは、議長は、これを適當の委員會に付託し、その審査を経て會議に付する。但し、特に緊急を要するものは、議院の議決で委員會の審査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회의에 부의한다. 단,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은 議院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委員會において、議院の會議に付するを要しないと決定した議案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い。但し、委員會の決定の日から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七日以内に議員二十人以上の要求があるもの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위원회에서 議院의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이를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議員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④ 前項但書の要求がないときは、その議案は廃案となる。(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 <p>②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除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④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
| <p>衆議院規則 第三十六條 議員がその發議した議案及び動議を撤回しようとするときは、發議者の全部からこれ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委員會の議題となった後にこれを撤回するには委員會の許可を要し又會議の議題となった後には、議院の許可を要する。(의원이 그 발의한 의안이나 動議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부로부터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의 의제로 된 후에 이를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요하며, 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議院의 허가를 요한다.)</p> | <p>제35조</p> <p>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동의를 철회는 발의한 자 전부로부터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의안과 동의를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一百三十四條 發言は、すべて議題外に涉り又はその範圍を超えてはならない。(발언은 의제의 바깥에 걸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p> | <p>제42조 의원은 의제 외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p> |
| <p>国会法 第六十一條 ① 各議院の議長は、質疑、討論その他の發言につき、予め議院の議決があつた場合を除いて、時間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의 의장은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 미리 議院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議員が時間制限のため發言を終らなかつた部分につき特に議院の議決があつた場合を除いては、議長の認める範圍内において、これを會議録に掲載する。(議員이 시간제한에 따라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특히 議院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한다.)</p> | <p>제44조</p> <p>① 의장은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의원이 시간제한되므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을 때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六十二條 各議院の會議は、議長又は議員十人以上の發議により、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議決があつたときは、公開を停める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의 회의는 의장 또는 議員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 議員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p> | <p>제45조</p> <p>① 국회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회의의 개부를 결의한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六十三条 秘密會議の記録中、特に秘密を要するものとその院において議決した部分は、これを公表しないことができる。(비밀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요하는 것으로 院이 의결한 부분은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② 비밀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히 하여야겠다고 결의한 부분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p>衆議院規則 第一百五十二条 議長が必要と認めたとき、又は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記名投票で表決を採る。(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p> <p>衆議院規則 第一百五十三条 記名投票を行う場合には、問題を可とする議員は白票を、問題を否とする議員は青票を投票箱に投入する。(기명투표를 행할 경우에는 문제를 可타 하는 의원은 白票에, 不可타 하는 의원은 青票을 투표함에 투입한다.)</p> | <p>제50조</p> <p>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p> <p>③ 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可타 하는 의원은 白票에, 不可타 하는 의원은 青票에 각각 성명을 쓰고 투표함에 투입한다.</p> <p>④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可타 하는 의원은 白票을, 不可타 하는 의원은 黑票을 투표함에 투입하고 동시에 그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p> <p>⑤ 만일 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가부의 결과에 異動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필요가 없다.</p> |
| <p>国会法 第六十八条 会期中に議決に至らなかつた案件は、後会に継続しない。(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p> | <p>제52조 ①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중 위원회에 계속시켜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二百条 會議録には次の事項を記載する。(회의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p> <p>一 開議、休憩、散會及び延會の年月日時時刻(개회, 휴게, 산회 및 延會의 연월일시)</p> <p>二 議事日程(의사일정)</p> <p>三 召集に応じた議員の氏名(소집에 응한 의원의 성명)</p> <p>四 開會式に関する事項(개회식에 관한 사항)</p> <p>五 議員の異動(의원의 異動)</p> <p>六 議席の指定及び変更(의석의 지정 및 변경)</p> <p>七 要求書の受領並びに通知書の發送及び受領(요구서의 수령과 통지서의 발송 및 수령)</p> <p>八 奏上に関する事項(奏상에 관한 사항)</p> <p>九 議案の發議、提出、付託、送付、回付及び撤回に関する事項(의안의 발의, 제출, 송부, 회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p> <p>十 出席した國務大臣及び政府特別補佐人の氏名(출석한 국무대신 또는 정부위원의 성명)</p> <p>十一 會議に付された案件及びその内容(회의에 부친 안건 또는 그 내용)</p> <p>十二 委員會の報告書及び少数意見書(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소수의견)</p> <p>十三 議長の報告(의장의 보고)</p> <p>十四 議事(의사)</p> <p>十五 質問主意書及び答弁書(질문主意書 또는 답변서)</p> <p>十六 選舉及び記名投票の投票者の氏名(선거 또는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p> <p>十七 議員の發言補足書(議員의 발언보충서)</p> <p>十八 その他議院又は議長において必要と認めた事項(기타 議院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p>제53조</p> <p>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左의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성립, 개회, 폐회, 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일,시 2. 개회, 延會, 중지와 산회의 월,일,시 3. 출석 국무위원, 정부위원 성명 4. 의장과 위원의 보고 5.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 6.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 성명 7. 결의사항 8. 표결과 가결의 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p> <p>제54조</p> <p>①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일정, 의안, 투표자 성명과 제반의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第二百二条 議員がその演説の参考として簡単な文書を會議録に掲載しようとするときは、議長の許可を受ける。(議員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코저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衆議院規則 第二百二条 演説した議員は、會議録配付の日の翌日の午後五時までに、その字句の訂正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但し、演説の趣旨を変更することはできない。(연설한議員은 회의록을 배부하는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p> | <p>② 의원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코저 할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p> <p>③ 연설한 의원은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정정을 청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p> |
| <p>国会法 第六十九条 内閣は、国会において國務大臣を補佐するため、兩議院の議長の承認を得て政府委員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내각은 국회에서 국무대신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 議院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정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七十条 國務大臣及び政府委員が、議院の會議又は委員会において発言しようとするときは、議長又は委員長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이 議院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p> <p>国会法 第七十一条 委員会は、議長を経由して國務大臣及び政府委員の出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대신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 <p>제55조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승낙을 얻고 정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p> <p>제56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된다.</p> <p>제57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七十四条 ① 各議院の議員が、内閣に質問しようとするときは、議長の承認を要する。(각 議院의議員이 내각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요한다.)</p> <p>② 質問は、簡明な主意書を作り、これ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질문은 간명한 主意書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国会法 第七十五条 ① 議長又は議院の承認した質問については、議長がその主意書を内閣に轉送する。(의장 또는 議院이 승인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장은 그 主意書를 내각에 전송한다.)</p> <p>② 内閣は、質問主意書を受け取つた日から七日以内に答弁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期間内に答弁しないときは、理由を明示することを要する。(내각은 질문主意書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国会法 第七十六条 質問が、緊急を要するときは、議院の議決により口頭で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議院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七十七条 質問に対する内閣の答弁に関し、議員の動議により、討論又は表決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질문에 대한 내각의 답변에 관하여는 議員의 動議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付할 수 있다.)</p> | <p>제58조</p> <p>①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② 질문은 간명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p> <p>제59조 ①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p> <p>②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p> <p>③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p> <p>제60조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付할 수 있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八十条 ① 請願は、各議院において委員会の審査を経た後これを議決する。(청원은 각 議院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이를 의결한다.)</p> <p>② 委員会において、議院の會議に付するを要しないと決定した請願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い。但し、議員二十人以上の要求があるもの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위원회에서 議院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청원은 이를 회의에 부의한다. 단, 議員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国会法 第八十一条 ① 各議院において採択した請願で、内閣において措置するを適当と認めたものは、これを内閣に送付する。(각 議院에서 채택한 청원으로서 내각이 조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내각에 송부한다.)</p> <p>② 内閣は、前項の請願の処理の経過を毎年議院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내각은 전항 청원의 처리경과를 매년 議院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62조 ①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p> <p>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제63조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p> <p>② 정부는 전항 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p>国会法 第三百条 各議院は、審査又は調査のため、議員を派遣する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은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議員을 파견할 수 있다.)</p> <p>国会法 第三百四条 各議院から審査又は調査のため、内閣、官公署その他に対し、必要な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求めたときは、その求め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각 議院에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내각, 관공서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国会法 第三百六条 各議院は、議案その他の審査又は国政に関する調査のため、証人の出頭を求めたときは、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旅費及び日当を支給する。(각 議院에서 의안 기타 심사 또는 국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증인의 출두를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p> <p>国会法 第三百五条 ① 内閣及び各省は、その刊行物を国会図書館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내각 및 각 省은 그 간행물을 국회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図書館運営委員会において必要と認めたものについては、内閣及び各省をしてこれを各議員に配付させることができる。(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과 각 省으로 하여금 이를 각 議員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p> | <p>제65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66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7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두를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p> <p>제68조 ①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국회에 송치하여야 한다.</p> <p>② 국회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三百七条 各議院は、その議員の辞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閉会中は、議長において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각 議院은 그 議員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 <p>제70조 ①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p> <p>③ (제1문 생략) 만일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国会法 第八八条 各議院の議員が、他の議院の議員となり、又は法律により議員たることのできない職務に任ぜられたときは、退職者となる。(각 議院의 議員이 다른 議院의 議員이 되거나 법률상 議員이 맡을 수 없는 직무를 맡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p> <p>国会法 第八九条 各議院の議員が、法律に定めた被選の資格を失つたときは、退職者となる。(각 議院의 議員이 법률로써 정한 피선거격을 잃은 때에는 퇴직된다.)</p> <p>国会法 第一百条 各議院の議員に欠員が生じたときは、その院の議長は、内務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각 議院의 議員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院의 의장은 내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제71조</p> <p>①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p> <p>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p> <p>제72조 의원이 권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八十九條 議員が他の議員の資格について争訟を提起しようとするときは、争訟の要領、理由及び立証を具える訴状及びその副本一通を作りこれに署名して、これ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議員이 다른 議員의 자격에 대한 争訟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争訟의 요령, 이유 및 입증을 갖춘 訴狀 및 그 부분 1통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衆議院規則 第九十條 ① 議長は、訴状を委員会に付託し、同時に訴状の副本を資格争訟を提起された議員(これを被告議員という。)に送付して、期日を定めて答弁書を提出させる。(의장은 소장을 위원회에 부탁함과 동시에 소장의 부분을 자격쟁송이 제기된 議員(이를 피고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기일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p> <p>② 被告議員が天災、疾病その他避けがたい事由により、期日までに答弁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議長は、更に期日を定めて答弁書を提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피고의원이 천재, 질병 기타 피지못할 사유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衆議院規則 第九十一條 被告議員が期日までに答弁書を提出したときは、議長は、直ちにこれをその委員会に送付する。(피고의원이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장은 곧바로 이를 위원회에 송부한다.)</p> <p>衆議院規則 第九十二條 委员会は、訴状及び答弁書によって審査する。期日までに答弁書が提出されなかったときは、訴状だけで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위원회는 소장 또는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일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p> | <p>제73조</p> <p>①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청심서와 그 부분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② 의장은 전항의 청심서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p> <p>③ 피심의원이 천재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바를 증명하는 때에는 의장은 재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p>제74조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한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第九十六條 委員會は、審査に當つて必要があると認めたる時は、議長を経由して原告議員及び被告議員を委員會に招致し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위원회가 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원고의원 또는 피고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衆議院規則 第九十七條 被告議員及びその弁護人は、會議において弁明し又は弁護することができる。(피고의원 또는 그 변호인은 회의에서 변명하거나 변호를 할 수 있다.)</p> | <p>제75조 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제77조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케 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一百三條 議員は、その資格のないことが証明されるまで、議院において議員としての地位及び権能を失わない。但し、自己の資格争訟に関する會議において弁明はできるが、その表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의원은 그 자격이 없음이 증명될 때까지 議院에서 議員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쟁송에 관한 회의에서는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 <p>제78조 의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
| <p>国会法 第一百五條 各議院において、必要とする警察官吏は、議長の要求により内閣がこれを派出し、議長の指揮を受ける。(각 議院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관리는 의장의 요구에 따라 내각이 이를 파견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p> <p>衆議院規則 第二百九條 衛視は議事室内、警察官吏は議事室外の警察を行う。但し、議長において特に必要と認めるときは、警察官吏をして議事室内の警察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경위는 의사당 내의, 경찰관리는 의사당 외의 경찰을 행한다. 단,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의사당 내의 경찰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p> | <p>제80조</p> <p>① 국회는 그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한다.</p> <p>②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議場 내에서, 경찰관은 議場 외에서 경호한다.</p> |
| <p>国会法 第一百六條 會議中議員がこの法律又は議事規則に違ひその他議場の秩序をみだし又は議院の品位を傷けるときは、議長は、これを警戒し、又は制止し、又は發言を取り消させる。命に従わないときは、議長は、当日の會議を終るまで發言を禁止し、又は議場の外に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회의중에 議員이 이 법률 또는 의사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議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議院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警戒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을 취소한다. 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장은 당일 회의를 마칠 때까지 발언을 금지하거나 議場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p> | <p>제81조 의원이 회의중에 본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議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손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一百九條 各議院において、無礼の言を用い、又は他人の私生活にわたる言論をしてはならない。(각 議院에서는 무례한 말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国会法 第二百條 議院の會議又は委員會において、侮辱を被つた議員は、これを議院に訴えて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議院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議員은 그 議院에 소구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p> | <p>제82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第二百十條 議院内部において現行犯があるときは、衛視又は警察官吏は、これを逮捕して議長の命令を請わ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議場においては、議長の命令がなければ逮捕することはできない。(議院 내부에 현행범이 있는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리는 이를 체포하여 의장의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議場에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p> | <p>제84조 국회 원내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議場 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p> |
| <p>国会法 第一百八條 ① 傍聴人が議場の妨害をするときは、議長は、これを退場させ、必要な場合は、これを警察官庁に引渡すことができる。(방청인이 議場에서 방해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퇴장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傍聴席が騒がしいときは、議長は、すべての傍聴人を退場させることができる。(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p> | <p>제85조 ① 의장은 議場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p> |
| <p>衆議院規則 第二百二十三條 新聞社及び通信社には一會期に通ずる傍聴章を交付する。(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장을 교부한다.)</p> | <p>제86조 ③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장을 교부한다.</p> |
| <p>衆議院規則 第二百二十八條 議長が必要と認めるときは、衛視又は警察官吏をして傍聴人の身体検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방청객의 신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p> | <p>제87조 ②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p> |
| <p>国会法 第二十一条 ① 各議院において懲罰事犯があるときは、議長は、先ず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し審査させ、議院の議を経てこれを宣告する。(각 議院에 징벌사범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우선 이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議院의 회의를 거쳐 이를 선고한다.) ② 委員会において懲罰事犯があるときは、委員長は、これを議長に報告し処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위원회에 징벌사범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議員は、二十人以上の賛成で懲罰の動議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動議は、事犯があつた日から三日以内に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議員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벌의 動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動議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89조 ①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붙이어서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③ 의원은 18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를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次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p> |
| <p>国会法 第二百四條 議員が正当な理由がなく召集日から七日以内に召集に応じないため、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会議又は委員会に欠席したため、若しくは請暇の期限を過ぎたため、議長が、特に招状を發し、その招状を受け取つた日から七日以内に、なお、故なく出席しない者は、議長が、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する。(議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청가기한이 도과하여, 의장이 특히 招狀을 발하고 그 招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다.)</p> | <p>제92조 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붙인다.</p> |

| 일본 국회법(1947) 및 중의원규칙(1947) | 한국 국회법 초안(1948) |
|--|--|
| <p>衆議院規則 第二百四十条 懲罰委員会は、議長を経由して本人及び関係議員の出席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징벌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의 출석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p> | <p>제95조 징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
| <p>衆議院規則 第二百四十七条 議院が懲罰を議決したときは、議長は、これを宣告する。秘密会議において議決した場合は、公開の議場においてこれを宣告する。(議院에서 징벌을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선고한다. 비밀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된議場에서 이를 선고한다.)</p> | <p>제97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장에서 선포한다.</p> |

[부록 3]

1948년 6월 당시 행정연구위원회와 관련된 헌법안들의 比較表

| 행정연구위원회안 (행정연구위원회 1946.3.1. 작성완료) | 공동안 (행정연구위원회유진오 1948.5.31. 작성완료) | 본회의 이송안 (1948.6.23. 국회법 기초위원회 →본회의 이송) | 최종 재현헌법 (1948.7.17. 국회 의결) |
|---|--|---|--|
| 제2장 국회 | 제3장 국회 | 제3장 국회 | 제3장 국회 |
| 제5조 ① 국회는 매년 11월에 대통령이 이를 소집함. ② 회기는 40일로 함. 단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은 15일에 한하여 회기를 연장함을 득함. ③ 대통령은 대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기를 정하여 임시국회를 소집함을 득함. | 제36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합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일일에 집회한다. 제37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 의장의 연명으로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 국회 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승인을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 제33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합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일일에 집회한다. 제34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 제34조 (左同) 제35조 (左同) |
| (해당조항 없음) | 제38조 참의원의 회기는 민의원의 회기와 동시에 시종한다. | (해당조항 없음) | (해당조항 없음) |
| 제6조 ① 대통령은 대의원을 해산함을 득함. 단 동일원인에 의한 해산은 1회에 한함. ② 대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새로이 의원을 선거하여야 해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함을 요함. ③ 대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정회됨. | 제39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의 제1 월요일에 국회는 집회한다. | (해당조항 없음) | (해당조항 없음) |
| (해당조항 없음) | 제40조 양 議院은 각각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 제35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 제36조 (左同) |
| 제7조 ① 양 議院은 헌법으로써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각기 의원총수 반수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개시하며 의결함을不得함. ② 양 議院의 의사는 헌법으로써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함. | 제41조 양 議院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36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37조 ①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 행정연구위원회 (행정연구위원회 1946.3.1. 작성완료) | 공동안 (행정연구위원회유진오 1948.5.31. 작성완료) | 본회의 이송안 (1948.6.23. 국회법 기초위원회 → 본회의 이송) | 최종 제헌헌법 (1948.7.17. 국회 의결) |
|---|--|--|-------------------------------|
| 제15조 양 議院 중 1원에서 부결한 법률안은 동 회기중 此를 재제출함을 不得함. | (해당조항 없음) | (해당조항 없음) | (해당조항 없음) |
| (해당조항 없음) | 제45조 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예산안과 조세에 관한 법률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견을 할 때, 또는 예산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 議院 협의회를 연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견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40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한다. | 제41조 (左同) |
| 제11조 ① 양 議院 及 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及 국무위원의 출석을 구함을 得함. ② 대통령은 양 議院에 대하여 교서를 발함. 교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此를 낭독함. ③ 국무총리, 국무위원 及 정부위원은 양 議院 及 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得함. | 제48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양 議院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각 議院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 제4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 제44조 (左同) |
| (해당조항 없음) | 제49조 ① 양 議院은 각각 議員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4조 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5조 (左同) |
| (해당조항 없음) | 제51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양 議院의 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7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8조 (左同) |
| 제3장 대통령 및 정부 | 제7장 재정 | 제2장 재정 | 제7장 재정 |
| 제2절 내각 | | | |
| (중략) | (중략) | (중략) | (중략) |

| 행정연구위원회 (행정연구위원회 1946.3.1. 작성완료) | 공동안 (행정연구위원회유진오 1948.5.31. 작성완료) | 본회의 이송안 (1948.6.23. 국회법 기초위원회 → 본회의 이송) | 최종 제헌헌법 (1948.7.17. 국회 의결) |
|---|--|--|---|
| <p>제43조</p> <p>① 국가의 수요에 응함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의 승인을 득함을 요함.</p> <p>② 국가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내각이 각 회계연도마다 이를 예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을 요함.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률로써 이를 정함.</p> | <p>제97조</p> <p>①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내각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특별히 계속하여 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환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 국회는 내각의 동의 없는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p> | <p>제90조</p> <p>①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총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환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p> | <p>제91조</p> <p>①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정기회 개최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左同)</p> <p>③ (左同)</p> |
| (중략) | (중략) | (중략) | (중략) |
| <p>제47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법률로써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각은 전년도 예산을 시행함.</p> | <p>제100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p> | <p>제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p> | <p>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p> |
| <p>제48조 내각은 회계감사원의 검사보고와 공히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해제를 구함을 요함.</p> | <p>제101조</p> <p>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p> <p>② 내각은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해제를 얻어야 한다.</p> <p>③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p> | <p>제94조</p> <p>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p> <p>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p> | <p>제95조</p> <p>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p> <p>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p> |
| (중략) | | | |
| <p>제3절 회계감사원 및 고사원</p> <p>제49조</p> <p>① 결산을 감사확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을 치함.</p> <p>② 회계감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써 이를 정함.</p> | | | |